

시민행복·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제19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2019.09.02.~2019.09.11.

---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 【교통국】

김 포 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 업 설 명 서**

---



# 목 차

## ■ 교통국

○ 교통과 .....	1
○ 교통개선과 .....	43
○ 안전총괄과 .....	89
○ 도로건설과 .....	131
○ 도로관리과 .....	173
○ 철도과 .....	209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교 통 과**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공 통		= 34,000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301-12 기타 보상금	·100,000원 * 340명 = 34,0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3.21.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참여 보고[교통과-9256(2019.03.21.)호]
- 2019.05.30. : 도비 보조금 내시
- 2019.07.01. :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019.07.11. :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2019.09.01.~2019.12.31. : 사업 시행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추진계획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신규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교통정책팀장 김영은	담당자	시설8급 전보배	전화	2465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공 통		= 1,632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카드 제작	301-12 기타 보상금	·4,800원 * 340매 = 1,632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3.21.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참여 보고[교통과-9256(2019.03.21.)호]
- 2019.08월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추진계획 보고
- 2019.08월 : 교통카드 디자인 제작
- 2019.09.01.~2019.12.31. : 사업 시행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추진계획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신규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교통정책팀장 김영은	담당자	시설8급 전보배	전화	2465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공 통		= -78,000	
교통정보시설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교통정보시설(UTIS) 유지관리 - 26,000,000원 * 3개월 = -78,000	3개월분 감액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01. : 2019년 교통정보시설(UTIS) 유지관리 용역 착수
- 2019.12.31. : 2019년 교통정보시설(UTIS) 유지관리 용역 준공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추진계획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센터관리(서버 및 네트워크장비 1식) - 현장관리(CCTV 39대, VMS 11대, RSE 44대, 광전송장비 등)	
2018년	- 센터관리(서버 및 네트워크장비 1식) - 현장관리(CCTV 39대, VMS 11대, RSE 44대, 광전송장비 등)	
2019년	- 센터관리(서버 및 네트워크장비 1식) - 현장관리(CCTV 18대, VMS 8대, RSE 44대, 광전송장비 등)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282,000	214,510	0	67,490	
2018년	252,000	214,702	0	37,298	
2019년	312,000	107,351	0	204,649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교통정보팀장 신동진	담당자	방송통신9급 이용구	전화	5923
-----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공 통		= 483,000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201-02 공공운영비	·무인단속카메라 보험료 및 운영비 - 기존 : 1,000,000원 * 12월 - 변경 : 250,000원 * 12월 = -9,000	
	401-01 시설비	·진명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 도로 재포장 : 1,800,000원 * 18a - 표지판 설치 : 15,000,000원 * 1개 - 유색포장 : 35,000원 * 1,500㎡ = 32,500 = 15,000 = 52,500	
		·양도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 고원식 횡단보도 : 4,000,000원 * 1개소 = 4,000	
		·하성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 도로 재포장 : 1,500,000원 * 14a - 유색포장 : 35,000원 * 1300㎡ - 고원식 횡단보도 : 4,000,000원 * 3개소 = 21,000 = 45,500 = 12,000	
		·신양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 표지판 설치 : 15,000,000원 * 1개 - 유색포장 : 35,000원 * 1,100㎡ = 15,000 = 38,500	
		·수남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 유색포장 : 35,000원 * 1,230㎡ = 43,000	
		·월곶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 고원식 횡단보도 : 4,000,000원 * 1개소 = 4,000	
		·나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 그루빙포장 : 200,000원 * 100㎡ = 20,000	
		·학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 유색포장 : 35,000원 * 1,600㎡ = 56,000	
		·노란신호등 설치 : 15,000,000원 * 7개소 = 105,000	가현초 감정초 유현초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설치 : 4,000,000원 * 7개소 = 28,000	신흥초 수남초 신흥초 하성초

##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9. : 실시설계
- 2019.09.~2019.10.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완료
- 2019.10.~2019.12. : 착공 및 준공 예정
- 2019.09.~2019.12.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 및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추진계획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유현초 어린이보호구역 지중화사업 - 대곶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2018년	- 양도초 보도재포장 및 과속방지턱 설치 - 개곡초 도로재포장 및 보도재포장 - 양곡초·통진초 도로재포장 - 호수초 횡단보도 신설 - 마송초 미끄럼방지포장 및 속도제한표시 - 학운초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	
2019년	- 감정초 외 1개소 미끄럼방지포장 시공 - 사우초 외 2개소 안전펜스 설치 - 나비초 노면 재도색 - 라온유치원 외 3개소 미끄럼방지포장 시공 - 호수초 중앙분리대 설치 - 은여울초 외 5개소 노란신호등·노란발자국·엘로카펫 설치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868,471	117,621	736,102	14,748	
2018년	1,303,722	1,230,665	-	73,057	
2019년	642,000	348,700	-	293,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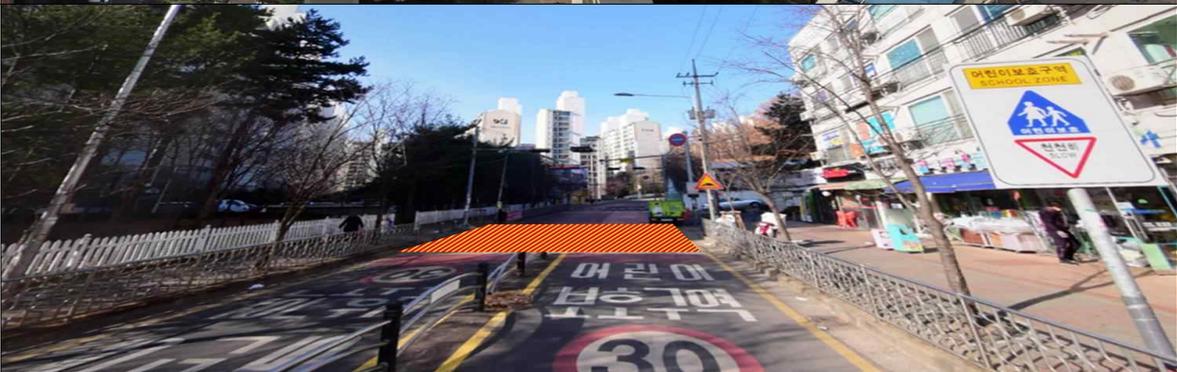
□ 진명유치원 정비



□ 서암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p>위치도</p>	
<p>현장사진</p>	

□ 양도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p>위치도</p>	
<p>현장사진</p>	

□ 하성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p>위치도</p>	 <p>하성초등학교</p>
<p>현장사진</p>	

□ 수남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p>위치도</p>	 <p>수남초등학교</p>
<p>현장사진</p>	

□ 월곶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p>위치도</p>	
<p>현장사진</p>	

□ 학운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p>위치도</p>	
<p>현장사진</p>	

□ 나비초 그루빙포장



□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주차시설팀장 이창훈	담당자	시설9급 이기욱	전화	2327
-----	-----	------------	-----	----------	----	------

#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P - 16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0. ~ 2019. 12. ○ 위 치 : 풍무로 207(사우동) 외 29개소
- 사업규모 : 30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옥외 소화전 주변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로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1,300			21,300	21,300	
국 비							
도 비		21,300			21,300	21,300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고질적 안전무시관행의 개선을 위한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사업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 □ 예산편성근거

근거문서	2019년도 특별교부세(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교부결정 통보	경기도 안전기획과-6540(2019.04.17.)호
근거내용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중 옥외 소화전 주변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특별교부세 교부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옥외 소화전 주변 경계석 5m에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하기 위함
- 고질적 안전무시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절대주정차 금지구간에 적색표시를 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공통			21,300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사업	401-01 시설비	·710,000원 * 옥외 소화전 30개소 =	21,3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9. : 사업 발주 및 계약
- 2019.10. : 풍무동, 사우동 18개소 설치
- 2019.11. : 북변동, 걸포동, 양촌읍 등 12개소 설치
- 2019.12. : 사업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신규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신규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교통정보팀장 신동진	담당자	방송통신7급 신유호	전화	5922
-----	-----	------------	-----	------------	----	------

# [버스정보시스템 운영프로그램 구매] (P - 16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9. ~ 2019. 12. ○ 위 치 : 관내 버스정보단말기 현장
- 사업규모 : 선수동(35274) 정류소 외 10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버스정보시스템 현장 PC에 대한 보안 안전성 확보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000			3,000	3,000	
국 비							
도 비							
시 비		3,000			3,000	3,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버스정보시스템 현장PC 운영체제인 Win7에 대한 기술지원이 중단(2020.1.14.)됨에 따라 Win10 OS로 업그레이드 필요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김포시정보보안기본지침	제28조 제2항 제18조 제7항
근거내용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서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확인하되, 연 1회 이상 서버 설정정보 및 저장자료의 절취, 위·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을 점검한다. ⑦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확인하되, 연 1회 이상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의 절취, 위·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을 점검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버스정보시스템 현장PC에 대한 운영체제(Window10) 구입을 통한 지속적인 보안관리 환경구축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공 통		=	3,000
버스정보시스템 운영프로그램 구매	201-01 사무관리비	·Window 10 Upgrd OLP NR Gov(운영PC용) : 272,000원 * 11개 ≒	3,0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10. : 계약 및 물품 구입
- 2019.10.~2019.11. : 설치완료
- 2019.11. : 정상운영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추진계획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신규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교통정보팀장 신동진	담당자	방송통신9급 이용구	전화	5923
-----	-----	------------	-----	------------	----	------

#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용역] (P - 16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5. 07. ~ 2020. 03. 01.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김포시 관내 주요도로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시민이 편리한 지능형 교통체계 수립으로 도로환경 개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50,000	300,000		-150,000	150,000
국 비						
도 비						
시 비		150,000	300,000		-150,000	150,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적용 인건비 산정 시 기준참여율 변경(100% → 50%)에 의한 감액 발생
- 감사담당관 계약심사 결과(인건비, 여비 등 감액) 및 용역계약 시 낙찰률(81.585%) 적용에 따른 감액 발생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
근거내용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반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2019.2월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라 추진하는 법정계획으로, 기 수립된 추진계획의 종료시점이 도래되어 재수립 필요
- 우리 시 한강신도시와 구도심과의 연계, 인근 지자체와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공 통		=	-150,000
지능형교통체계 (ITS)기본계획 수립용역	201-01 연구용역비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기존 : 300,000,000원 * 1식 - 변경 : 150,000,000원 * 1식 =	-150,0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5.07. :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19.08.14. :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 2019.06.~2019.09. : 자료수집 및 분석 등
- 2019.10. :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예정)
- 2019.10.~2020.02. : 단계별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및 구축계획 도출
- 2020.03. :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보고회(예정)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추진계획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신규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교통정보팀장 신동진	담당자	방송통신7급 신유호	전화	5922
-----	-----	------------	-----	------------	----	------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시설 확충] (P - 29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0. ~ 2019. 12. ○ 위 치 :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 사업규모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 5개소 및 성능개선 25개소 등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불법주정차 방지 및 원활한 차량소통 확보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322,900	1,801,600	972,900	12,700	816,000	478,700	
국 비							
도 비							
시 비	1,322,900	1,801,600	972,900	12,700	816,000	478,7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주민 단체들의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요구와 장비 노후화에 따른 단속 정확도 결여로 민원발생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4조의2 제1항
근거내용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신규설치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들의 안전보행 및 원활한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함
- 노후화된 단속 장비를 교체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의 신뢰성 향상 및 원활한 민원처리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공 통		= 816,000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시설 확충	401-01 시설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 50,000,000원 * 5개소 = 250,000	
		·무인단속카메라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 25개소 설치	
		- 단속카메라 : 20,000,000원 * 25대 = 500,000 - 보조카메라 : 1,750,000원 * 38대 = 66,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7 : 추진계획 수립
- 2019.09 : 도로점용 허가 등 행정 협의 완료
- 2019.10 : 행정예고 실시 및 물품발주요청
- 2019.12 : 신규설치 5개소, 성능개선 25개소 준공완료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0,737,200	7,135,600	1,801,600	972,900	12,700	816,000	1,800,000	
공 정 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10,737,200	7,135,600	1,801,600	972,900	12,700	816,000	1,800,0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9 : 도로점용 허가 등 행정 협의 완료
- 2019.10 : 행정예고 실시 및 물품발주요청
- 2019.12 : 신규설치 5개소, 성능개선 25개소 준공완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불법주정차 단속 CCTV(고정형) : 27대 -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 23개소 -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3,333㎡),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성능개선(15개소) 등	
2018년	- 불법주정차 단속 CCTV(고정형) : 17개소 -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 27개소 -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1,933㎡),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성능개선(18개소) 등	
2019년	- 불법주정차 단속 CCTV(고정형) : 9개소 -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 87개소 -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1,066㎡),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성능개선(11개소) 등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2,090,000	1,890,840	-	199,160	
2018년	1,322,900	1,244,125	-	78,775	
2019년	985,600	719,851	-	265,749	'19.6.30.기준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교통정보팀장 신동진	담당자	방송통신7급 신유호	전화	5922
-----	-----	------------	-----	------------	----	------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지원] (P - 29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0. ~ 2019. 12. ○ 위 치 : 교통과
- 사업규모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 등 운영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한 효과적인 계도단속 운영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992,532	598,465	720,825	29,000	-151,360	-394,067	
국 비							
도 비							
시 비	992,532	598,465	720,825	29,000	-151,360	-394,067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19.2월 김포시 전역 점심시간 단속유예 조치로 인한 불법주정차 단속건수의 감소
-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블랙박스 노후화로 인한 오작동 증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0조 제3항 제161조 제1항 제3호 제16조
근거내용	<p><b>제160조(과태료)</b></p> <p>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b>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b></p> <p>3. 제160조제2항제4호의3·제4호의4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 등</p> <p><b>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b></p> <p>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p>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과태료 부과건수의 감소로 인한 우편요금 지출의 불용이 예상되어 예산 감액 필요
- 운행량이 많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을 통한 사고대비 철저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공 통		=	-151,360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등기 우편요금 - 기존 : 2,130원 * 20,000건 * 12월 - 변경 : 2,130원 * 14,000건 * 12월	= -153,360
	405-01 자산및품취득비	·단속차량 블랙박스 구입 : 500,000원 * 4대	= 2,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 98,497 건 - 불법주정차 부과 건수 : 77,301 건 -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금액 : 3,003,363천원 -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금액 : 2,200,260천원 - 과태료 징수율 : 73.2%	
2018년	-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 127,568 건 - 불법주정차 부과 건수 : 116,537 건 -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금액 : 4,547,714천원 -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금액 : 3,330,351천원 - 과태료 징수율 : 76.9%	
2019년	-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 48,781 건 - 불법주정차 부과 건수 : 44,357 건 -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금액 : 1,706,466천원 -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금액 : 1,281,549천원 - 과태료 징수율 : 75%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921,603	876,282	-	45,320	
2018년	992,532	785,261	-	184,270	
2019년	749,825	267,788	-	482,027	'19.6.30.기준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주차질서팀장 이금석	담당자	행정8급 유지수	전화	5568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공 통		= 55,126	
불법주정차 견인차고지 조성 및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견인료 : 35,000원 * 350대 = 12,250	
	201-02 공공운영비	·견인단속용 장비사용 통신요금 : 650,000원 * 3월 = 1,950	
	309-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견인차보관소 운영비 - 인력운영비 = 22,553 - 운영경비 = 12,444 - 배상금 등 = 600	
	404-01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견인차보관소 물품구입 - 자산취득비 [VPN장비, 카드결제 단말기] = 3,329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견인단속용 장비구입 : 1,000,000원 * 2대 = 2,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7.10. : 불법주정차 견인차고지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
- 2018.10. : 견인차고지 정비공사 완료
- 2019.09. : 견인업무 시민홍보 및 단속원 교육실시
- 2019.10. ~ : 시범운영 및 견인단속 실시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2018년	2018. 11월 견인차고지 노후시설 정비완료	
2019년	2019. 4월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 조례 공포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6년	-	-	-	-	
2017년	-	-	-	-	
2018년	452,272	158,257	50,940	243,075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주차질서팀장 이금석	담당자	행정9급 유유경	전화	5567
-----	-----	------------	-----	----------	----	------

# [마산1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P - 29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0. 01. ~ 2020. 05. 31. ○ 위 치 : 김포시 마산동 645-24번지
- 사업규모 : 공영주차장 조성(2,007㎡, 80면)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자주식주차장 건립을 통한 인근 주차난 및 불법주정차 해소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700,000			2,700,000	
국 비						
도 비						
시 비		2,700,000			2,700,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마산1 공영주차장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 예산 수립 필요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주차장법	제7조 제1항
근거내용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예정	수립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8.11월	2019. 8월 (예정)	2019.7월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김포한강신도시 상가주택 지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난 해소
- 지속적인 주차장 확충 요구 민원 접수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공 통		=	2,700,000
마산1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마산1 공영주차장 토지매입(2,007㎡)	= 2,700,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060,000		2,700,000			2,700,000	360,000	
공 정 별	설계비	10,000					10,000	
	보상비	2,700,000	2,700,000			2,700,000		
	공사비	350,000					350,0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10. : 토지 매입
- 2020.01. : 실시설계
- 2020.03. : 공사 착공
- 2020.05. :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신규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주차시설팀장 이창훈	담당자	시설7급 이시구	전화	2330
-----	-----	------------	-----	----------	----	------

# [마산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P - 29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0. 01. ~ 2020. 05. 31. ○ 위 치 : 김포시 마산동 662-14번지
- 사업규모 : 공영주차장 조성(1,230.7㎡, 49면)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자주식주차장 건립을 통한 인근 주차난 및 불법주정차 해소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600,000			1,600,000	
국 비						
도 비						
시 비		1,600,000			1,600,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마산2 공영주차장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 예산 수립 필요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주차장법	제7조 제1항
근거내용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수립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8.11월	-	2019.7월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김포한강신도시 상가주택 지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난 해소
- 지속적인 주차장 확충 요구 민원 접수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공 통		= 1,600,000	
마산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마산2 공영주차장 토지매입(1,230.7㎡) = 1,600,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960,000		1,600,000			1,600,000	360,000	
공 정 별	설계비	10,000					10,000	
	보상비	1,600,000	1,600,000			1,600,000		
	공사비	350,000					350,000	
	감리비							
	부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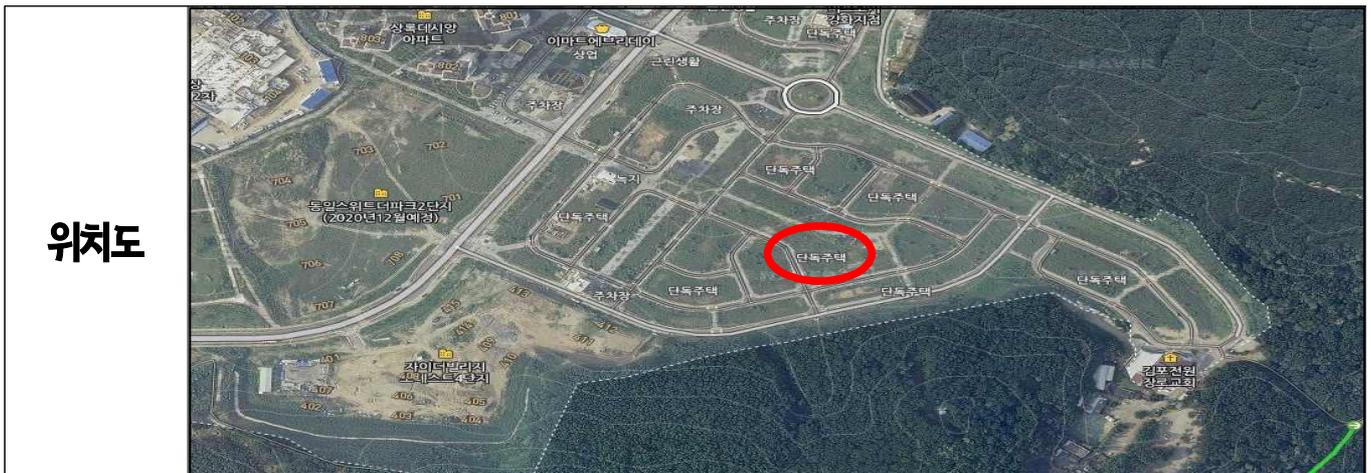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10. : 토지 매입
- 2020.01. : 실시설계
- 2020.03. : 공사 착공
- 2020.05. :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신규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주차시설팀장 이창훈	담당자	시설7급 이시구	전화	2330
-----	-----	------------	-----	----------	----	------

# [운양1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P - 29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0. 01. ~ 2020. 05. 31. ○ 위 치 : 김포시 운양동 1309-8번지
- 사업규모 : 공영주차장 조성(1,385.5㎡, 52면)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자주식주차장 건립을 통한 인근 주차난 및 불법주정차 해소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300,000			2,300,000	
국 비						
도 비						
시 비		2,300,000			2,300,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운양1 공영주차장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 예산 수립 필요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주차장법	제7조 제1항
근거내용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예정	수립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8.11월	2019.8월 (예정)	2019.7월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운양동 내 문화예술부지 인근 추후 발생할 주차수요에 적극 대응코자 민간에게 매각 전 주차장 부지 매입
- 지속적인 주차장 확충 요구 민원 접수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공 통		=	2,300,000
운양1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운양1 공영주차장 토지매입(1,385.5㎡)	= 2,300,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550,000		2,300,000			2,300,000	250,000	
공 정 별	설계비	10,000					10,000	
	보상비	2,300,000		2,300,000		2,300,000		
	공사비	240,000					240,0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10. : 토지 매입
- 2020.01. : 실시설계
- 2020.03. : 공사 착공
- 2020.05. :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신규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주차시설팀장 이창훈	담당자	시설7급 이시구	전화	2330
-----	-----	------------	-----	----------	----	------

# [운양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P - 29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0. 01. ~ 2020. 05. 31. ○ 위 치 : 김포시 운양동 1338-5번지
- 사업규모 : 공영주차장 조성 (604.2㎡, 23면)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자주식주차장 건립을 통한 인근 주차난 및 불법주정차 해소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950,000			950,000	
국 비						
도 비						
시 비		950,000			950,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운양2 공영주차장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 예산 수립 필요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주차장법	제7조 제1항
근거내용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수립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8.11월	-	2019.7월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운양동 내 문화예술부지 인근 추후 발생할 주차수요에 적극 대응코자 민간에게 매각 전 주차장 부지 매입
- 지속적인 주차장 확충 요구 민원 접수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공 통		=	950,000
운양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운양2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604.2㎡)	= 950,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110,000		950,000			950,000	160,000	
공 정 별	설계비	10,000					10,000	
	보상비	950,000	950,000			950,000		
	공사비	150,000					150,0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10. : 토지 매입
- 2020.01. : 실시설계
- 2020.03. : 공사 착공
- 2020.05. :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신규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주차시설팀장 이창훈	담당자	시설7급 이시구	전화	2330
-----	-----	------------	-----	----------	----	------

# [운양3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P - 29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0. 01. ~ 2020. 05. 31. ○ 위 치 : 김포시 운양동 1317-11번지
- 사업규모 : 공영주차장 조성 (789.9㎡, 30면)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자주식주차장 건립을 통한 인근 주차난 및 불법주정차 해소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200,000			1,200,000	
국 비						
도 비						
시 비		1,200,000			1,200,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운양3 공영주차장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 예산 수립 필요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주차장법	제7조 제1항
근거내용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수립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8.11월	-	2019.7월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운양동 내 문화예술부지 인근 추후 발생할 주차수요에 적극 대응코자 민간에게 매각 전 주차장 부지 매입
- 지속적인 주차장 확충 요구 민원 접수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공 통		=	1,200,000
운양3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운양3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789.9㎡)	= 1,200,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380,000		1,200,000			1,200,000	180,000	
공 정 별	설계비	10,000					10,000	
	보상비	1,200,000	1,200,000			1,200,000		
	공사비	170,000					170,0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10. : 토지 매입
- 2020.01. : 실시설계
- 2020.03. : 공사 착공
- 2020.05. :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신규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주차시설팀장 이창훈	담당자	시설7급 이시구	전화	2330
-----	-----	------------	-----	----------	----	------

# [장기5 자주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P - 29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0. 01. ~ 2020. 12. 31. ○ 위 치 : 김포시 장기동 2025-2번지
- 사업규모 : 자주식 주차장 건립(3,043㎡)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자주식주차장 건립을 통한 인근 주차난 및 불법주정차 해소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250,000			1,250,000	
국 비						
도 비						
시 비		1,250,000			1,250,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장기5 자주식 주차장 증설에 따른 예산 수립 필요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주차장법	제7조 제1항
근거내용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적정	수립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8.11월	2019.4월	2019.3월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장기동 수변상가 지역에 방문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인근 주차난이 심각하여 기존 공영주차장으로 주차난 해소 지난
- 지속적인 주차장 확충 요구 민원 접수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공 통		=	1,250,000
장기5 자주식 주차장 건립	401-01 시설비	장기5 자주식 공영주차장 조성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공사비	= 250,000 = 1,000,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000,000		1,250,000			1,250,000	2,750,000	
공 정 별	설계비	250,000	250,000			250,000		
	보상비							
	공사비	3,350,000		1,000,000		1,000,000	2,350,000	
	감리비	300,000					300,000	
	부대비	100,000					100,000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10. : 실시설계
- 2020.05. : 공사 착공
- 2020.12. :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신규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위치도 및 현장사진

<b>위치도</b>	
<b>현장사진</b>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주차시설팀장 이창훈	담당자	시설7급 이시구	전화	2330
-----	-----	------------	-----	----------	----	------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교통개선과**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P - 16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25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의욕 고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75,900	150,600	148,200		2,400	74,700	
국 비							
도 비	75,900	150,600	148,200		2,400	74,700	100%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사업계획 상 지급대상자 증가(247명→251명)로 예산 증액 확정 내시 및 자금 교부(경기도 택시정책과 -3883(2019.04.09.))

## □ 법적근거

근거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제5호
근거내용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생략)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거법령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 제5호, 제8조의2
근거내용	제8조(재정지원 사업) (생략)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도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5. 콜택시 위치정보(LBS)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통신료 지원 사업 제8조의2(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채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19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경기도 택지정책과-3883(2019.04.09.))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평균임금 수준이 시내버스 대비 63% 수준으로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이 직방지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처우개선지원금 지급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개인별 월 50천원 지원(도비100%)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합 계	= 150,600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50,000원 × 251명 × 12월	= 150,6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2019.12 : 사업집행(매월)
  - 2020.1. : 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총 1389명분(7~12월) 69,450,000원 지원	2018년 하반기 신규사업
2019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총 1145명분(1~5월) 57,250,000원 지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75,900	69,450	-	6,450	
2019년	148,200	57,250	-	90,950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개선과	택시화물팀장 남궁행	담당자	행정8급 곽진용	전화	5552
-----	-------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P - 16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9월 ~ 12월
- 사업규모 : 택시 승차거부, 미터기 미사용 등 위반행위 차량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택시 위반행위 근절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 예산요구 현황

○ 위 치 : 김포시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0	3,000			3,000	
국 비						
도 비						
시 비	0	3,000			3,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2019.04.17.)에 따른 신규사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9조
근거내용	제9조(신고포상금 제도) ① 시장·군수는 주민 체포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군 조례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지급기준·심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 조례로 별도로 정한다. ③ 신고포상금의 재원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과 징수한 과태료(과징금)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군의 전년도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을 제출받아 해당 시·군의 전년도 신고포상금 지급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한다.	
근거법령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
근거내용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5.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택시 승차거부, 미터기 미사용 등 여객법 및 택시발전법 위법행위 7종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으로 위법행위 근절, 서비스 개선 효과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 미터기 미사용 근절에 따른 택시 실차율 및 가동률 증가로 향후 택시 총량제 용역 시 증차 효과
-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20만원 /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20만원
  -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 20만원 / 택시 승차거부 : 5만원 / 택시 미터기 미사용 : 10만원
  -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영업 행위 : 10만원 / 대여자동차(렌터카) 유사택시 영업행위 : 10만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합 계 =	3,0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301-12 기타보상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	3,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2.01. :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계획 수립
- 2019.03.05.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2019.03.20. : 제191회 임시회 조례 의결
- 2019.04.17. : 조례 공포
- 2019.09. :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해당없음(신규사업)**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개선과	택시화물팀장 남궁행	담당자	행정8급 곽진용	전화	5552
-----	-------	------------	-----	----------	----	------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9,000		19,000			19,000	
공 정 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19,000		19,000		19,0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09. ~ 10월. :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실시
- 2019. 10월. : 준공

□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누수현장)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개선과	버스운영팀장 채재열	담당자	행정9급 서상훈	전화	2455
-----	-------	------------	-----	----------	----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대상	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9.11	2019.08	-	2019.08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도심지 화물차 밤샘주차로 인한 안전(교통사고) · 환경(매연)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시민들의 단속요구 급증
- 관내 화물업계의 휴게시설 및 주차차난 해소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내 공영화물차고지 설치·운영 계획 수립
- 각종 상급기관 행정계획 일정을 감안하여 금회 추경 예산수립 필요
  - 2019.12.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수요조사(경기도)
  - 2020.03.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사전심사자료 제출(경기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합 계 = 594,280	
공영화물차고지 설치계획 용역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 공영화물차고지 타당성 조사 및 공영화물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 - 수요, 경제성, 후보지 및 입지적정성 분석·평가, 규모, 유치시설, 사업시행 방안, 관리, 운영방안 등 = 69,610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관리계획 수립, 측량, 각종 평가 및 검토서 (교통, 환경, 재해 등 -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결과 준용) = 105,030	
		·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 국계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각종 평가 및 검토서 (교통, 환경, 재해 등) = 419,64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94,280		594,280			594,280		
공 정 별	설계비	594,280	594,280			594,280		
	보상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7. : 공영화물차고지 설치계획 용역 예산 수립 요구
- 2019.08. : 용역과제 심의자료 제출 및 심의
- 2019.09. : 공영화물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 착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변경) 착수
- 2020.01. : 사업비 60억 초과시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 '20.03.완료) → '21년 국도비 예산확보
- 2020.02. : 도시관리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변경)용역 착수(~'20.10.)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b>위치도</b> 10,000 :1 이상 (칼라)</p>	
<p><b>현장사진</b> (칼라)</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개선과	택시화물팀	담당자	시설7급 권성준	전화	5569
-----	-------	-------	-----	----------	----	------

# [버스 및 택시 정류소 시설 개선] (P - 165)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9월~2019.12월      ○ 위    치 : 운양동 1406-2 외 1개소 및 걸포북변역, 장기역 주변
- 사업규모 : 노선 기점 차량 대기소 설치, 택시정류소 베이 설치 2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시 편의제공을 위해 교통시설(버스 및 택시정류소 등) 개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b>계</b>	310,000	936,000	250,000	550,000	136,000	626,000	
국 비							
도 비							
시 비	310,000	936,000	250,000	550,000	136,000	626,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광역버스 노선 신설 기종점 예정지 버스대기공간 및 편의시설 마련
- 도시철도역 주변 택시정류소 추가 설치 대상 지역 중 장기역, 걸포북변역 2개소 교통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베이 설치 필요(김포경찰서 검토 의견)에 따라 추가 예산 필요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근거내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신도시 확정된 M버스(장기본동~운양동) 노선 개설운영 시 기종점 편의시설(운수종사자) 및 버스대기를 위한 공간 마련
- 원도심 G버스(풍무동~당산역~영등포)노선 개설·운영 시 기종점에서 버스 대기 위한 공간 마련
- 걸포북변역, 장기역 주변은 노선 버스의 통행량이 많고 교통 혼잡 지역으로 버스 차량과의 위빙, 정차공간 부족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별도 베이 설치 필요 → 추가 예산 확보 필요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합 계 = 136,000	
버스 및 버스 및 택시정류소 시설 개선	401-01 시설비	· 버스쉘터 : 10,000,000원*2개소 = 20,000 · 배차사무실 설치 : 15,000,000원*2개소 = 30,000 · 베이설치 : 30,000,000원*2개소 = 60,000 · 택시베이 : 10,000,000원*2개소 = 20,000 · 실시설계 : 3,000,000원*2개소 = 6,000	

## □ 사업 추진계획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936,000	250,000	550,000	136,000		
공정별	설계비		66,000	40,000	20,000	6,000		
	보상비							
	공사비		870,000	210,000	530,000	130,000		
	감리비							
	부대비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버스대기공간>

- 2019. 08. ~ 2019. 9. : 관련 부서 협의(도로점용 등)(버스)
- 2019. 09. : 공사 착공(버스)
- 2019. 11. : 공사 준공(버스)

<택시정류소>

- 2019. 06 : 김포경찰서 협의완료(택시)
- 2019. 07 : 관계부서 협의 및 실시설계(택시 정류소)
- 2019. 08 : 공사착공(택시 정류소)
- 2019. 09 : 공사 준공(택시)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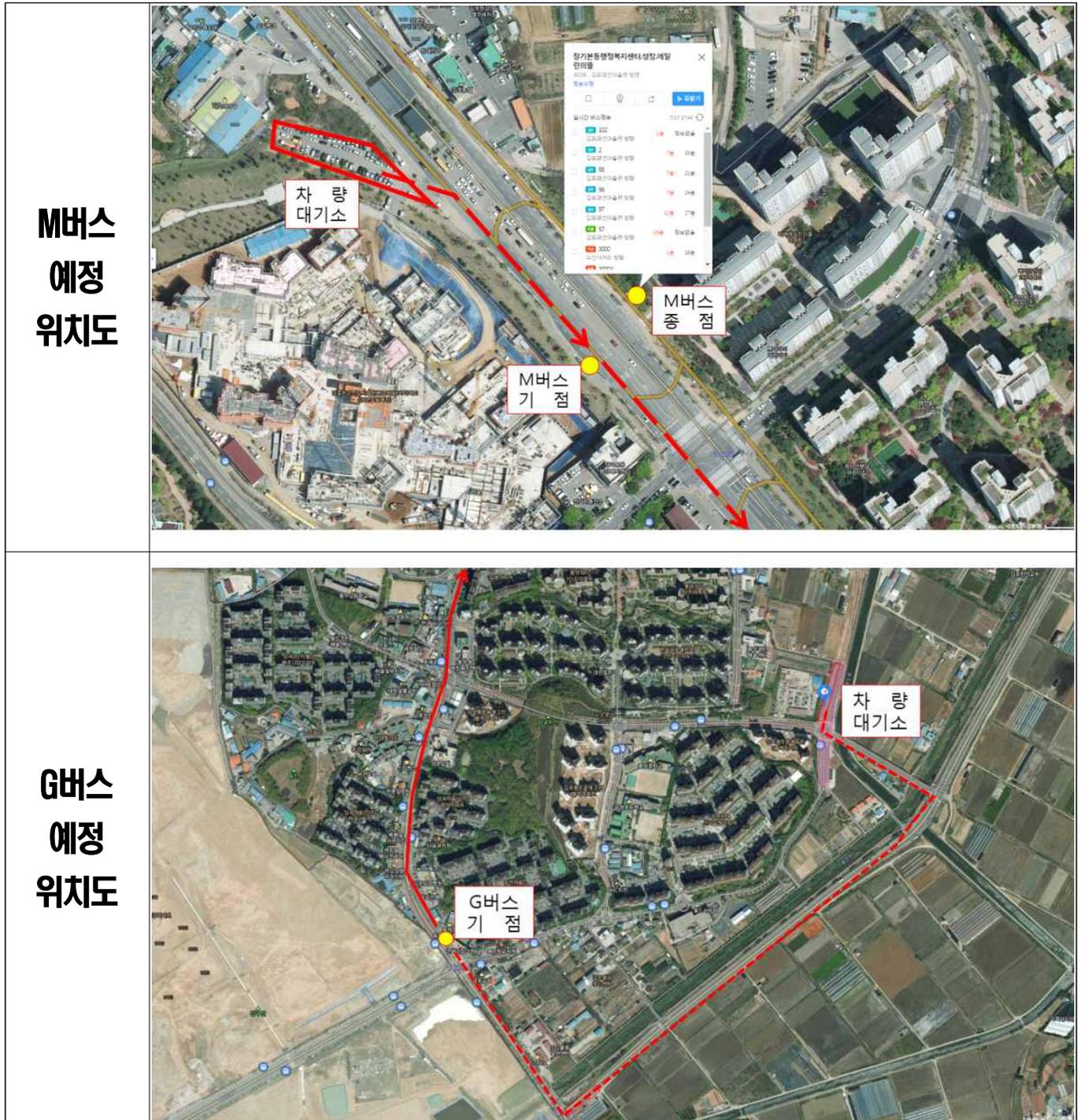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반도유보라2차 버스정류소 외 환승거점형 정류소 1개소 신설 · 양촌읍 지난마을 버스정류소 외 48개소 이설 및 신설 · 장기동 호반아파트 버스정류소 외 사각표지판형 정류소 58개소 설치 이설 및 신설 · 사우동 장릉입구 버스정류소 외 P형표지판 정류소 9개소 설치 · 운양동, 걸포동 외 5개 읍면동 내 버스정류소 71개소 조명시설 설치	
2018년	· 사우동 문화체육공원앞 버스정류소 외 쉘터형 정류소 15개소 이설, 신설 및 철거 · 반도유보라정문 버스정류소 외 사각표지판형 정류소 19개소 이설 및 신설 · 고막저수지입구 버스정류소 외 P형표지판 정류소 14개소 이설, 신설 및 철거 · 운양동, 걸포동 외 8개 읍면동 내 버스정류소 36개소 조명시설 설치	
2019년	· 구래동 이편한세상.한강아이파크 버스정류소 외 쉘터형 정류소 5개소 이설, 보수 및 신설 · 사우동 풍년마을 버스정류소 외 사각표지판형 정류소 2개소 이설 · 통진읍 서암초교앞 버스정류소 외 P형표지판 정류소 21개소 설치 · 북변동 외 읍면동 내 버스정류소 1개소 조명시설 설치 및 교체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470,000	461,220	-	8,780	
2018년	310,000	227,413	60,000	22,587	
2019년	800,000	60,568	-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개선과	버스운영팀장	채재열	담당자	시설9급	문나연	전화	2457
-----	-------	--------	-----	-----	------	-----	----	------

# [저상버스 도입 보조] (P - 165)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10 ~ 12
- 사업규모 : 저상버스 2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
- 예산요구 현황

○ 위 치 : 김포시 전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924,398	1,103,616	824,742	94,938	183,936	820,782	
국 비	962,199	551,808	412,371	47,469	91,968	410,391	50%
도 비	144,333	82,776	61,857	7,123	13,796	61,557	7.5%
시 비	817,866	469,032	350,514	40,346	78,172	348,834	42.5%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저상버스 도입 대수 증가(당초 10대 → 변경 12대(증2대))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제4항
근거내용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장애인등 교통약자와 일반 이용객이 더불어 함께 이용하는 차별 없는 대중교통 수단 확보
- 저상버스 당초 10대 → 12대 변경(추가 2대) 도입으로 예산 증액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합 계 = 1,103,616	
저상버스 도입보조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저상버스 도입 보조 : 91,968천원 * 12대 = 1,103,616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7 : 저상버스 18대 도입 완료(2018년 이월 8대 포함)
- 2019.11 : 저상버스 2대 도입
- 2019.12 : 최종 집행실적 보고 및 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2017. 4~6월 : 저상버스 20대 도입(33번)	
2018년	2018. 1~8월 : 저상버스 50대 도입(60번, 1002번, 33번, 2번) 2018. 12월 : 저상버스 10대 도입 (60번)	
2019년	2019. 1~5월 : 저상버스 10대 도입(60번) 2019. 7월 : 저상버스 8대 도입(90-1번)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6,284,398	1,953,160	4,331,238		
2018년	6,255,636	5,522,532	733,104		
2019년	1,692,784	957,040		735,744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개선과	재정지원팀장 주세자	담당자	행정7급 류효녀	전화	5917
-----	-------	------------	-----	----------	----	------

#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P - 165)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규모 : 저상버스 88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연료비·정비비 등 운행비용 일부 보전을 통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455,000	440,000	490,000	-50,000	-15,000	
국 비						
도 비	91,000	88,000	98,000	-10,000	-3,000	20%
시 비	364,000	352,000	392,000	-40,000	-12,000	8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 사업 물량 변경(98대→88대) 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제4항
근거내용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법령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근거내용	① 도지사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비 및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상버스 구입비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8.9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저상버스 도입 지원으로 실제 도입 및 운행분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함에 따라 예산 감액
- 저상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료비, 정비비 등 운행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합 계 = 440,000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 5,000,000원* 88대 = 44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12 : 당초 저상버스 98대 도입 계획 → 변경 90대 도입완료
- 2019.06 : 상반기 운영비 보조(2,500천원/대당)
- 2019.12 : 하반기 운영비 보조(2,500천원/대당)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상반기 20대분 × 2,500천원 = 50,000천원 지원 하반기 30대분 × 2,500천원 = 75,000천원 지원	
2018년	상반기 31대분 × 2,500천원 = 77,500천원 지원 하반기 46대분 × 2,500천원 = 115,000천원 지원	
2019년	상반기 73대분 × 2,500천원 = 182,500천원 지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230,000	125,000	0	105,000	
2018년	455,000	192,500	0	262,500	
2019년	490,000	182,500	0	307,500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개선과	재정지원팀장 주세자	담당자	행정7급 류효녀	전화	5917
-----	-------	------------	-----	----------	----	------

#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 (P - 165)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규모 : 공영버스 1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교통취약지역의 상시 대중교통 수단 확보를 위한 공영버스 구입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33,750	33,750	67,500		-33,750	0
국 비						
도 비		10,125	20,250		-10,125	10,125 30%
시 비	33,750	23,625	47,250		-23,625	-10,125 7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도 재정지원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대상 변경내시(2대→1대)에 따른 예산 감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근거내용	제50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 낡은 차량의 대체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근거법령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자동차 등록 및 관리)제3항
근거내용	③공영버스 운영주체는 사업의 운영 및 차량의 유지·관리에 따른 모든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은 공영버스운영결손이 심하여 공영버스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유류대,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를 지방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의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농어촌 교통취약지역 공영버스 구입 지원 대수(2대→1대) 변경에 따른 예산감액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합 계 = 33,750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지원	402-02 민간차본사업보조	○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 33,750,000원 * 1대 = 33,7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10 : 농어촌 공영버스 차량(9년) 만료에 따른 대·폐차 지원
- 2019.11~2019.12 : 최종 집행실적 보고 및 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53번 노선 1대 / 농어촌 공영버스 차량(9년) 만료에 따른 대·폐차 지원	도비보조
2018년	53-3번 노선 1대 / 농어촌 공영버스 노후에 따른 대·폐차 지원	자체
2019년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33,750	33,750	0	0	
2018년	33,750	33,750	0	0	
2019년	67,500	0	0	67,500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개선과	재정지원팀장 주세자	담당자	행정7급 류효녀	전화	5917
-----	-------	------------	-----	----------	----	------

#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 (P - 165)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위 치 : 김포시 전역
- 사업규모 : 공공형버스 6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교통취약지역 해소 및 테마공원 연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816,000	600,000		216,000	816,000	
국 비		408,000	300,000		108,000	408,000	균특50%
도 비							
시 비		408,000	300,000		108,000	408,000	5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신도시내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므로 신도시 순환버스를 유모차 탑승에 편리한 저상버스 2대 추가 도입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2항
근거내용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근거내용	제50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교통약자 이용 편의 확보 및 소음이 적고 친환경적인 CNG 저상버스 추가 도입
- 차량 및 시설장비 구입 : CNG저상버스 2대, 뉴카운티 4대 구입 및 영상저장 장치 설치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합 계 = 816,000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차량구입 - CNG 저상버스 220,000,000원*2대 = 440,000 - 카운티 81,700,000원*4대 = 326,800	
	201-02 공공운영비	- 보험료 5,000,000원*6대 = 30,000 - 도색 2,000,000원*6대 = 12,000 - 영상저장장치 1식 800,000원*6대 = 4,800 - 요금함 1식 400,000원*6대 = 2,4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9 :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노선 공모
- 2019.10~12 : 운송사업자 확정 및 차량구입, 운행준비
- 2020.01 : 운행개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해당없음(신규사업)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개선과	버스운영팀장 채재열 재정지원팀장 주세자	담당자	행정7급 오진환 행정7급 류효녀	전화	2456 5917
-----	-------	--------------------------	-----	----------------------	----	--------------

# [맞춤형 버스 지원사업] (P - 16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1 ~ 12
- 사업규모 : 맞춤형 버스 4개 노선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벽·오지 및 산업단지 등 대통교통 취약지역에 요일·시간대별 수요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버스서비스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00,000	644,000	600,000		44,000	144,000	
국 비							
도 비	250,000	322,000	300,000		22,000	72,000	50%
시 비	250,000	322,000	300,000		22,000	72,000	5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맞춤형버스 군부대 확대 추진에 따른 7번 노선 2대 추가하여 예산 증액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근거내용	<p><b>제50조(재정지원)</b>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p>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p> <p>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채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시설 접근성 개선 및 지역명소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요일·시간대별 수요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버스 서비스 제공
- 맞춤형버스 7번 노선 군부대 확대 추진에 의한 변경 내시로 예산 증액 편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합 계 = 644,000	
맞춤형 버스 지원	307-09 운수업체보조금	· 김포운수(맞춤형1,4번) 24,000,000원 × 12월 = 288,000 · 선진상운(맞춤형3,7번) 26,000,000원 × 12월 = 312,000 (7번노선 추가) 14,666,000원 × 3월 44,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2 : 맞춤형 버스 운영지원금(1차) 교부(도→시) 및 보조금 운수업체 지원
- 2019.04 : 맞춤형 버스 운영지원금(2차) 교부(도→시) 및 보조금 운수업체 지원
- 2019.07 : 맞춤형 버스 운영지원금(3차) 교부(도→시) 및 보조금 운수업체 지원
- 2019.10 : 맞춤형 버스 운영지원금(4차) 교부(도→시) 및 보조금 운수업체 지원
- 2019.12 : 최종 집행실적 보고 및 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맞춤형 버스 4개 노선 운영지원	
2018년	맞춤형 버스 4개 노선 운영지원	
2019년	맞춤형 버스 4개 노선 운영지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500,000	350,228		149,772	
2018년	500,000	500,000			
2019년	600,000	231,334		368,666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개선과	재정지원팀장 주세자	담당자	행정7급 류효녀	전화	5917
-----	-------	------------	-----	----------	----	------

#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P - 16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업규모 : 시내버스 운송업체 3개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을 통해 비수익 적자노선 운행 유지 및 버스 공기질 개선 등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214,090	1,835,705		2,143,663	-307,958	621,615
국 비						
도 비						
시 비	1,214,090	1,835,705		2,143,663	-307,958	621,615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19년 운수업체 주52시간 대비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예산으로 시군별 인구수 기준 변경 및 운송업체 실 적자 수지를 감안하여 도 재배분한 부담금 감액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0조 제94조
근거내용	<p><b>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b>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p> <p>10.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收益性)이 없는 노선의 운행</p> <p>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과 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p> <p><b>제50조(재정 지원)</b>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p>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p> <p>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p> <p>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p> <p>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b>제94조(재정지원)</b>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3.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p>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8.9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운수업체 주 52시간 대비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운수업체의 실적자 수지를 감안하여 도에서 재배분한 부담금으로 감액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합 계	= 1,835,705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308-07 자치단체부담금	. 55,879,600,000원 * 약 3.285107% (시·군 부담금 총액) * (2018.12월말 기준 인구 수)	= 1,835,705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2019.12 : 시내버스 청소년할인 결손액 산정 및 지원 (도 → 시 → 시내버스업체)
- 2019.01~2019.12 : 도 지정 벽지노선의 운행 손실금 지원(도 → 시 → 시내버스업체)
- 2019.04~2019.06 : 자치단체 부담금 납부(시→도)
- 2019.06~2019.12 : 시설개선 및 버스다양화고급화 사업 지원(도 → 시 → 시내버스업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청소년할인결손보전, 시설개선 사업, 벽지노선 지원, 시내버스 운수업체 경영 및 서비스개선지원	
2018년	청소년할인결손보전, 시설개선 사업, 벽지노선 지원, 저상버스 도입 추가지원	
2019년	청소년할인결손보전, 벽지노선 지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1,447,871	1,447,871	0	0	
2018년	1,214,090	1,214,090	0	0	
2019년	2,143,663	1,835,705	0	307,958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개선과	재정지원팀장 주세자	담당자	행정7급 류효녀	전화	5917
-----	-------	------------	-----	----------	----	------

#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P - 16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1 ~12 ○ 위 치 : 김포시 전역
- 사업규모 : 시내버스 운송업체 3개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시내버스 업체 간 자율적 경쟁을 통한 서비스개선을 도모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육성 발전 및 활성화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325,112	344,936		339,768	5,168	19,824
국 비						
도 비						
시 비	325,112	344,936		339,768	5,168	19,82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을 위하여 시군별 인구수기준 변경(18.9월말 → 18.12월말)으로 인구증가로 부담금 배분 비율 상향조정, 도에서 재배분한 부담금을 증액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근거내용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채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시군별 인구수 기준 2018년 12월 말로 변경 반영, 인구증가로 인하여 부담금 배분비율 상향으로 부담금 증액
- 2019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하여 경영 및 서비스 개선 도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합 계 = 344,936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308-07 자치단체부담금	10,500,000,000원 * 약 3.285107% (사군 부담금 총액) * (201812월말 기준 인구수) = 344,936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4~2019.12 : 경영 및 서비스 개선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경기도)
- 2019.09 : 자치단체부담금 납부(시→도)
- 2019.12 :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인센티브 지급(도 → 시 → 시내버스업체)
- 인센티브 사용 용도 : 재정지원금 지원액 중 50%이상을 운전직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기타복리후생비(국내외 여행 등), 별도 인센티브(현금 등)으로 집행 권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해당없음	
2018년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개선 지원	
2019년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0	0	0	0	
2018년	325,112	325,112	0	0	
2019년	339,768	0	0	339,768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개선과	재정지원팀장 주세자	담당자	행정7급 류효녀	전화	5917
-----	-------	------------	-----	----------	----	------

## [2층버스 전방높이 경보장치 설치 지원] (P - 16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10 ~ 12
- 사업규모 : 2층버스 5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전방 터널 및 고가 등 충돌위험성 경고하여 보다 안전한 2층버스 운행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4,000			34,000	34,000	
국 비							
도 비		34,000			34,000	34,000	100%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19년 2층버스 운용실태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5대(노선번호 8601A)를 대상으로 도비 100% 예산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근거내용	<b>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b>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li> <li>2. 저상(底床)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li> <li>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li> <li>4.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운영</li> <li>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li> </ol>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채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층버스 도입후 당산역 교각 하부 사고 발생(3차례)에 따른 전방 터널 및 고가 등 충돌경고 제공 수단 필요
- 5대(노선번호 8601A) 차량 상단에 3개의 적외선 레이저 센서를 부착하여 구조물 감지 → 통과높이 4m 이하로 판단시 경보음 발생
- 40km/h 주행시 구조물 반사도에 따라 215m ~ 40m 전방의 장애물 감지 및 차량 제동 가능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합 계 = 34,000	
2층버스 전방높이 경보장치 설치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2층버스 전방높이 경보장치 : 6,800,000원 * 5대 = 34,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10~2019.11 :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2019.12 : 보조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해당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개선과	재정지원팀장 주세자	담당자	행정7급 류효녀	전화	5917
-----	-------	------------	-----	----------	----	------

# [새경기준공영제 운영 지원] (P - 16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1~12
- 사업규모 : 3개 노선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비수익노선 등 취약지역의 공익적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 노선의 공공성 강화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주경 (D)		
계		157,007			157,007	
국 비						
도 비						
시 비		157,007			157,007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버스 노선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사업 대상 노선 선정에 따른 예산 편성
- 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에 위탁사업으로 시 부담지시액만 편성(도비:시비 분담율 = 50:50)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근거내용	<b>제50조(재정 지원)</b>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채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 위탁사업으로 자체예산(부담지시액) 편성하여 사업 지원
- 서울시 출퇴근 등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
  - 신규 : 마송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노선(북부권 G버스)
  - 기존 노선 전환 : 적자노선 8906번(덕정차고지~(김포영업소 경유)~범계역), G6001번(구래동 출발)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합 계 = 157,007	
새경기준공영제 운영 지원	308-10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9년 사업 분담액 : 연간 분담액(624,162천원/1년)*(92일/365일) = 157,007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9 : 새경기준공영제 노선입찰제 실시
- 2019.10 : 한정면허 발급
- 2019.10~12 : 차량준비 후 운행개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해당없음(신규사업)**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개선과	재정지원팀장 주세자	담당자	행정7급 류효녀	전화	5917
-----	-------	------------	-----	----------	----	------

# [광역버스등 파업대비 임시운영 지원] (P - 16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1~12 ○ 위 치 : 김포시 전역
- 사업규모 : 광역노선 7개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광역통행 수단인 광역버스 등 파업시 시민 교통불편 해소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0	90,000			90,000	
국 비						
도 비		27,000			27,000	30%
시 비		63,000			63,000	7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광역버스 등 파업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운수협정으로 투입된 전세버스 운영에 따른 임차비용 지원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23조 제9조
근거내용	<p><b>제11조(공동운수협정)</b>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運輸)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b>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b>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p> <p>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p> <p>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과 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p> <p><b>제9조(공동운수협정)</b>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2. 공동운수협정이 수송력 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주말이나 연휴 등 일시적인 수송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 수송수요의 증가분에 적합할 것</p>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채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서울로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파업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  
 ⇒ 파업 종료시까지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임시 광역 노선 운영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합 계	= 90,000
광역버스등 파업대비 임시운영 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200회(예상이용수요/45명)× 156천원/일(평균 전세버스 임차비)× 3일(파업예상일)	= 9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파업시 임시 광역노선 7개 : M6427(구래환승센터~강남역), 7000번(구래환승센터~당산역),  
M6117(구래환승센터~서울역), 3000번(월곶면사무소~신촌역), 8000번(대곶면사무소~영등포역),  
9008번(구래환승센터~부천), 21번(구래환승센터 ~ 개화환승센터)
- 광역버스 파업시 노선 운행계획에 따라 전세버스 업체 공동운수협정 체결
- ~ 2019.12 : 광역버스등 파업시 임시 광역노선 운행명령 및 전세버스 투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해당없음(신규사업)**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개선과	버스운영팀장 채재열 재정지원팀장 주세자	담당자	행정7급 오진환 행정7급 류효녀	전화	2456 5917
-----	-------	--------------------------	-----	----------------------	----	--------------

# [버스노선 내 전세버스 투입] (P - 16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5월 ~ 12월
- 사업규모 : 5개노선 20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서울 출근시간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0	468,420		166,320	302,100	468,420
국 비						
도 비						
시 비	0	468,420		166,320	302,100	468,42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철도개통 연기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출근시간 전세버스 20대 추가 투입운행(투입노선 및 차량대수 추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1항
근거내용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7호 :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근거법령	김포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	제2조
근거내용	제2조(재정지원) 김포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전세버스 투입을 통해 서울 환승거점(개화, 김포공항, 송정)까지 수송량 추가 확보
- 중기계약(12월까지 투입)시 전세버스 업체 참여 유도 가능(9-10월 행락철 성수기로 단기 투입 시 소극적)
- 경기전세버스운송조합 표준운송월가를 적용·정액 지원하여 노선버스 운수업체 참여 유도
- ※ 정액지원기준 : 노선편도 1회 운행당 142,500원 지원 (경기도전세버스표준운송원가 적용)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합 계 = 302,100	
버스노선 내 전세버스 투입	307-09 운수업체보조금	20대×142,500원/대×106일 = 302,1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4 : 시내버스 운수업체와 전세버스 투입 협의
- 2019.5 : 전세버스 1차 투입
- 2019.7.15. : 전세버스 추가 투입 검토(의회 사전보고 실시)
- 2019.7.16~7.26. : 노선버스 운수업체 및 전세버스 업체 투입 협의 실시 후 운행준비
- 2019.7.25. : 보조금심의위원회 실시
- 2019.7.29. : 개화역, 김포공항역, 송정역 연계노선 전세버스 20대 추가투입
- 2019.9월중 : 추가소요예산 확보(추경)
- 2019. 12월말 : 보조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19.5월 : 7000번 2대, 7100번 1대 투입 '19.6월 : M6117번 1대, G6000번 1대 투입 '19.7월말 : 8000,20,21,22,2번 총20대 추가투입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66,320	145,612	-	20,708	9.11.일 기준 예산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개선과	버스운영팀장 채재열	담당자	행정7급 오진환	전화	2456
-----	-------	------------	-----	----------	----	------

#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운영] (P - 16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규모 : 위원 34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대중교통 개선 및 교통정책 수립에 관하여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반영함으로써 교통편의 및 교통체계 효율성 증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5,040	9,088	14,080	-4,992	-5,952	
국 비						
도 비						
시 비	15,040	9,088	14,080	-4,992	-5,952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본예산 수립 시기(2018년 9월)와 기획단 구성시기(2018. 12월) 상이  
- 조례상 위원(40명) 대비 위촉인원(34명) 차이 발생
- 실제 지급대상 기준으로 수당 및 급식비 감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8호
근거내용	제3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근거법령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항
근거내용	시장은 위촉직 단원과 시민평가단, 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의 참고인 등이 기획단에 참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김포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대중교통기획단 운영을 위한 단원 회의수당 및 급식비
- 회의수당 및 급식비 실제 지급대상 인원으로 재산정(당초 본예산은 조례상 인원으로 산정)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합 계 = 9,088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회의수당 : 80,000원 × 25명 × 4회 (* 25명 : 기획단 위원 중 수당지급대상)	= 8,000
	301-09 행사실비보상금	○ 급식비 : 8,000원 × 34명 × 4회 (* 34명 : 기획단 위원수)	= 1,088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10.18. : 조례제정
  - 2018.10.~2018.11 : 단원추천 및 공개모집
  - 2018.12.11. : 대중교통기획단 위촉
  - 2019.04.02. : 2019년 제1차 정기회의
  - 2019.05.29. : 2019년 제2차 정기회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대중교통기획단 위촉 및 회의 : 2019.12.11	
2019년	- 정기회의 2회 개최 (4.2/5.29)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15,040	2,094	8,000	4,946	
2019년	14,080	4,029	-	10,051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개선과	대중교통기획팀장 김지옥	담당자	행정7급 심미정	전화	5912
-----	-------	--------------	-----	----------	----	------

# [대중교통 시민평가단 운영] (P - 16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9월 ~ 12월
- 사업규모 : 20명, 하반기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대중교통의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쾌적한 승차환경 정착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4,200		2,800	1,400	4,200
국 비						
도 비						
시 비		4,200		2,800	1,400	4,2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운수업체 주52시간 근로시간 적용에 따른 1차 노선개편 조정 후 대중교통 운영실태 평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
근거내용	제14조(시민평가단 구성) ① 기획단에는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민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내버스·마을버스·택시 및 철도의 안전운행, 서비스 실태 점검 2. 시내버스·마을버스·철도의 노선 및 배차시간에 대한 점검 등 3. 시내버스·마을버스·택시·철도 이용 만족도 조사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예산요구 필요성
  - 업체간업체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기여
  - 시민 참여를 통한 소통행정 추진 및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 증대 도모

- 평가단 구성계획
  - 인 원 : 20명(학생, 여성주부, 일반시민, 60대이상, 장애인)
  - 구성방법 : 상반기 평가단 중 자원자로 구성, 부족인원 공개모집(자원봉사자)
  - 활동지원 : 교통비 월3만원, 자원봉사시간 인정(회당 2시간)
- 평가기간 : 2019. 10월~11월
- 평가횟수 : 개인별 평가기간 중 8회
- 평가항목
  - 친 절 성 : 승객 응대태도, 인사배려 정도, 폭언, 욕설 등
  - 안 전 성 : 급출발·급정거, 급차로 변경, 무정차, 운전태도, 신호위반 등 적법안전운행
  - 쾌 적 성 : 안내방송 및 안내판 관리상태, 내부 청결도, 외부 청결도 등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합 계	= 1,400
대중교통 시민평가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운영비 : 200,000원 × 1회	= 200
	301-12 기타보상금	○ 교통비 : 30,000원 × 20명 × 2월	= 1,200

##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29. : 대중교통 시민평가단 운영계획 수립
  - 2019.04.01.~04.19 : 「대중교통 시민평가단」 모집
  - 2019.04.26. : 대중교통 시민평가단 위촉식 및 교육
  - 2019.05.01.~06.16 : 평가실시
  - 2019.07. : 평가결과 보고 및 운수업체 통보
  - 2019.10. ~ 11. : 평가 실시
  - 2019.12. : 평가결과 보고 및 운수업체 통보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상반기 평가실시(1회) : 34개노선 289회 평가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800	2,290	-	510	6.30일 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개선과	대중교통기획팀장 김지옥	담당자	행정7급 심미정	전화	5912
-----	-------	--------------	-----	----------	----	------

#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P - 16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규모 : 342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을 통해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37,000	171,000	176,000		-5,000	34,000
국 비	54,800	68,400	70,400		-2,000	13,600 40%
도 비	8,220	10,260	10,560		-300	2,040 6%
시 비	46,580	58,140	59,840		-1,700	11,560 34%
기 타	27,400	34,200	35,200		-1,000	6,800 자부담 20%

## □ 예산 증감사유

- 장착 대상 차량 감소(352대→342대)로 인한 사업계획변경(경기도 철도물류정책과-4807(2019.5.1.))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
근거내용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이하 “차로이탈경고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차체□	보조■	-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400,000원 × 342대 = 136,800	자부담 34,200

□ 추진경위 및 향후추진계획

- 2017. 1. : 교통안전법 개정(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 2017. 7. :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착비용 일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2019. 11. : 보조금 신청 접수 및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해당없음	
2018년	해당없음	
2019년	112대 44,800,000원 집행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	-	-	-	
2018년	109,600	-	109,600	-	
2019년	140,800	44,800		96,000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개선과	택시화물팀장 남궁행	담당자	행정8급 윤정우	전화	5918
-----	-------	------------	-----	----------	----	------

#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밤샘주차단속시스템 구축 사업] (P - 16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9월 ~ 12월
- 사업규모 :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밤샘주차단속시스템 구축 1식 및 관련장비 구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최신 스마트폰 기반의 “스마트기반 밤샘주차단속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현장단속 및 타기관 자료 이첩 전산화 실현으로 자료관리 생산성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36,400			36,400	
국 비						
도 비						
시 비		36,400			36,4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최신 스마트폰 기반의 “스마트기반 밤샘주차단속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현장단속 및 타기관 자료 이첩 전산화 실현으로 자료관리 생산성 향상

## □ 법적근거 - 해당없음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type="checkbox"/>	자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type="checkbox"/>	-	-	-	-	2019.7.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밤샘주차 현장 단속의 전산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 밤샘주차 단속 전산화 구축으로 체계적인 업무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응대
- 타기관 이첩시 자료의 편리하고 빠른 변환으로 행정력 절감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합 계	= 36,400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밤샘주차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b>현장 단속프로그램</b> · 밤샘주차 실시간프로그램, 세팅 및 설치 (무상지원) * 3EA	= 4,500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b>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밤샘주차 운영관리시스템 (실시간 연계기능 포함)</b> · 밤샘주차 서버 메인프로그램 - 단속내역 관리기능 / 증거사진 관리기능 - 단속통계 관리기능 / 사전예고서 출력기능 - 차적망연계기능(건설기계제외) - 단속내역 타기관 이첩기능	= 10,000
		<b>현장프린터</b> · 모바일프린터기기(WSP-R240) * 3EA - 인쇄방식 : 열전사방식 - 해상도 : 203dpi, 8dots/mm - 출력폭 : 2inch(48mm, 384dots) - 인쇄속도 : 100mm/sec(MAX) - 인터페이스 : UART(RS-232C or TTL), Bluetooth 2.1*EDR - 공급용지 : 감열용지(폭57mm) - 배터리 : Li-ion 7.4V	= 1,500
		<b>프린터 용지</b> · 모바일프린터용지 * 1EA - 롤지(스티커 용지) - 1박스 200롤 기준 - 1롤당 90~100건 출력 가능	= 400
		<b>국정원인증 DB암호화</b> · DB암호화 상용 SW(Echelon V2.5)-CC인증 * 조달청 3자단가 구매(조달수수료 포함) 1식	= 15,500

##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7.12. : 보안성 검토 요청
- 2019.07.15. : 정보화사업 타당성 심사 요청
- 2019.09.~2019.10. : 시스템 구축 (계약심사 및 발주,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설치 포함)
- 2019.11.~2019.12. : 서비스 개시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개선과	택시화물팀	담당자	시설7급 권성준	전화	5569
-----	-------	-------	-----	----------	----	------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안 전 총 괄 과**





# [시민안전 페스티벌] (P - 17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5. 24. ~ 5. 25. ○ 위 치 : 사우문화체육광장
- 사업규모 :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 3,500여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김포 조성을 위한 안전문화 축제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0,000	26,800	50,000		-23,200	-23,200	
국 비							
도 비							
시 비	50,000	26,800	50,000		-23,200	-23,2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공모사업 지자체 선정('19.2.28.)으로 체험장비 및 교육인력을 지원함에 따라 행사운영 비용 감액
- 제26회 방재의 날(5.25.) 기념식을 시민안전 페스티벌 개최식에서 개최하여 행사의 내실을 기함.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근거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사회·자연재난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자연스러운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 안전 대응 능력 제고
- 참여 유관기관 및 안전 단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재난체험 제공으로 시민 안전의식 고취
- 안전체험 홍보 프로그램 운영 (예 : 소방관 체험, 심폐소생술, 감염병 예방, 가스안전, 화생방 장비 체험, 교통안전, 실종예방, 안전상식 퀴즈 등)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시민안전 페스티벌	201-03 행사운영비	· 행사 체험 및 홍보비 등	△23,2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4.03. : 기본계획수립
- 2019.03.15. : 협조·참여 유관기관·단체 사전회의
- 2019.04.16. :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그림 공모전 개최
- 2019.05.24. ~ 05.25. : 방재의 날 기념식, 안전홍보,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안전그림 공모 우수작 전시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행사명 : 2017 시민안전 페스티벌 및 비전선포식 - 행사일시 : 2018. 11. 2.(목) 09:30~16:00 - 행사장소 : 사우문화체육광장 - 행사내용 : 개회식, 김포형 국제안전도시 비전 선포식, 안전체험행사 부스운영 - 18개 프로그램 - 참여인원 : 2,500여명(어린이집, 유치원생, 어린이·청소년, 일반시민)	
2018년	- 행사명 : 2018 김포 시민안전 &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페스티벌 - 행사일시 : 2018. 10. 26.(금) 09:30~16:30 - 행사장소 : 사우문화체육광장 - 행사내용 : 개회식-표창(6명), 안전관리현장 낭독, 군악대 연주, 안전체험행사 부스운영 - 유관기관 참여(10개), 민간단체 참여(3개) - 20개 프로그램 - 참여인원 : 2,500여명(어린이집, 유치원생, 어린이·청소년, 일반시민)	
2019년	- 행사명 : 2019 시민안전 페스티벌 - 행사일시 : 2019. 5. 24.(금) ~ 5. 25.(토) 10:00~16:30 - 행사장소 : 사우문화체육광장 - 행사내용 : 제26회 방재의 날 기념식(표창 및 시상 등) 안전홍보(12개 기관), 안전체험프로그램(25동), 안전그림공모 우수작 전시(51작) - 참여인원 : 3,500여명(어린이집, 유치원생, 어린이·청소년, 일반시민)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50,000	47,688	-	2,312	
2018년	50,000	47,650	-	2,350	
2019년	50,000	26,351	-	23,649	6.30.일 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장 채낙중	담당자	행정7급 박현지	전화	2911
-----	-------	------------	-----	----------	----	------

# 방재의 날 행사 운영 (P - 17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5. 24. ~ 5. 25. ○ 위 치 : 사우문화체육광장
- 사업량 : 방재의 날 행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25일로 지정된 「방재의 날」 기념 행사운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550	0	1,550		-1,550		
국 비							
도 비							
시 비	1,550	0	1,550		-1,55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제26회 방재의 날(5.25.) 기념 행사를 시민안전 페스티벌 개최식에서 개최하여 행사비 절감.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근거내용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대국민 재난예방 홍보 및 방재의식 제고를 위한 「방재의 날」 기념행사 추진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방재의 날 행사운영	201-03 행사운영비	· 시민안전 페스티벌 행사 시 「방재의 날」 기념행사 추진 =	△1,5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4.03. : 기본계획수립
- 2019.05.24. ~ 05.25. : 방재의 날 기념식, 안전홍보,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방재전문강사 초빙하여 김포시 자율방재단 및 유관기관, 김포시 재난관련 공무원 교육 실시 · 재난업무를 헌신적으로 노력한 방재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상장수여	
2018년	· 방재전문강사 초빙하여 김포시 자율방재단 및 유관기관, 김포시 재난관련 공무원 교육 실시 · 재난업무를 헌신적으로 노력한 방재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상장수여	
2019년	- 행사명 : 2019 시민안전 페스티벌 - 행사일시 : 2019. 5. 24.(금) ~ 5. 25.(토) 10:00~16:30 - 행사장소 : 사우문화체육광장 - 행사내용 : 제26회 방재의 날 기념식(표창 및 시상 등) 안전홍보(12개 기관), 안전체험프로그램(25동) - 참여인원 : 3,500여명(어린이집, 유치원생, 어린이·청소년, 일반시민)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1,200	898	-	302	
2018년	1,550	1,516	-	34	
2019년	1,550	0	-	1,550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장 채낙중	담당자	시간선택임기제 장지훈	전화	2605
-----	-------	------------	-----	-------------	----	------

# [풍수해 보험사업] (P - 17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풍수해보험 가입 1500여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800	26,500	6,500		20,000	23,700	
국 비							
도 비	560	5,300	1,300		4,000	4,740	
시 비	2,240	21,200	5,200		16,000	18,96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풍수해보험 가입률 증가에 따른 도비 내시금액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2항
근거내용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시민의 예기치 못한 재난피해 시 보험가입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비를 지방정부차원에서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풍수해 보험사업 : 20,000,000원 - 보험료 지원비(도비) : 4,000,000원 - 보험료 지원비(시비) : 16,000,000원 = 2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3.26. : 풍수해보험 현장설명회 개최
- 2019.06.19. : 풍수해보험 1분기 납부(예산 전액 소진)
- 2019.10.~12. : 풍수해보험 2~4분기 납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풍수해보험 가입 1485명	
2018년	풍수해보험 가입 1517명	
2019년	풍수해보험 가입 1436명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6,200	5,311	-	889	
2018년	2,800	2,800	-	-	
2019년	6,500	6,500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장 전익홍	담당자	공업9급 고경형	전화	2915
-----	-------	------------	-----	----------	----	------

# [재난안전상황실 유지관리] (P - 17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01.~2019.12. ○ 위 치 : 김포시청 재난안전상황실
- 사업규모 : 재난안전상황실의 노후된 아날로그 영상장비 교체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효율적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처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76,820	218,440	63,080	89,600	65,760	141,620	
국 비							
도 비							
시 비	76,820	218,440	63,080	89,600	65,760	141,62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재난안전상황실의 노후 아날로그 영상장비와 2019년 6월 교체한 영상회의용 디지털 모니터의 호환성 감소로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노후 아날로그 영상장비를 교체하고자 함.
- 재난안전 및 본관 당직 통합에 따른 일숙직비 지출잔액 감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
근거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도별 및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2019.7월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재난안전상황실의 노후 아날로그 영상장비와 2019년 6월 교체한 영상회의용 디지털 모니터의 호환성 감소로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노후 아날로그 영상장비 교체가 필요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합 계		= 65,760	
재난안전상황실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일속직 및 상황실 유지비용 = Δ30,24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재난안전상황실 영상장비 : 96,000,000원 = 96,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10~11 : 재난안전상황실 영상장비 교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일·속직 근무 - 각종 재난사고 상황 접수 및 확인 - 유관기관 통보·전파 및 초동조치 강구/ 재난상황 종합보고 및 전파 ※ AI·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구성 및 운영	
2018년	○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일·속직 근무 - 재난유형·규모의 판단 및 계통보고 - 유관기관 통보·전파 및 초동조치 강구/ 재난상황 종합보고 및 전파 ※ 고촌읍 신곡리 수난사고 초동보고 및 재난현장 지원	
2019년	○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일·속직 근무 - 재난유형·규모의 판단 및 계통보고 - 유관기관 통보·전파 및 초동조치 강구/ 재난상황 종합보고 및 전파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 일일점검 영상회의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63,320	60,868	-	2,452	
2018년	76,820	51,903	-	24,917	
2019년	152,680	111,639	-	41,041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장 채낙중	담당자	시간선택임기제 장지훈	전화	2605
-----	-------	------------	-----	-------------	----	------

# [폭염대책비 사업 - 성립전] (P - 17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8월 ~ 9월 ○ 위 치 : 김포시 전역
- 사업규모 : 폭염 행동요령 리플릿 제작 및 홍보물품 구매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폭염대응 예방활동 등을 통해 폭염피해 최소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3,230	7,000			7,000	-6,230
국 비						
도 비	13,230	7,000			7,000	-6,230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폭염대응 예방활동 사업비 교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2항
근거내용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채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의 장기화로 자연재난으로 추가 지정, 온열환자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폭염대응 예방활동 필요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폭염대책비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폭염대응 예방활동 물품 제작 -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 ; 7,000,000원 × 1식 = 7,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7.30. :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 2019.08~09. : 사업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136개) 5,535천원 - 쿨토시(1,430개), 쿨스카프(2,700개) 등 홍보물품 구입 7,695천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13,230	13,230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장 전익홍	담당자	시설9급 안재현	전화	2916
-----	-------	------------	-----	----------	----	------

# [한파 피해 예방] (P - 17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0월 ~ 12월
- 사업규모 : 관내 버스정류장 13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한파대책 추진으로 한파피해 최소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2,000			22,000	
국 비						
도 비						
시 비		22,000			22,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겨울철 한파 장기화 대비 버스정류장 등 실외 대기 장소에 온열텐트 확대 운영 필요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2항
근거내용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이상기후로 인한 겨울철 한파의 장기화로 자연재난으로 추가 지정,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등 실외 대기 장소에 온열텐트 설치 수요 증가
  - 기설치(8개소) : 구래환승센터, 가현초, 뉴고려병원, 장기상가, 초당마을주공@, 마산동 힐스테이트, 통진공영주차장, 선수동
  - 신규설치(5개소) :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일일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한파 피해 예방	401-01 시설비	○ 한파 대비 온열텐트 설치 = 22,000	
		- 기존 온열텐트 설치비 : 850,000원 × 8개소 = 6,800	
		- 신규 온열텐트 제작 및 설치 : 3,040,000원 × 5개소 = 15,2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2,000		22,000			22,000		
공 정 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22,000		22,000		22,0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12 : 온열텐트 설치(8개소, 재난관리기금 활용)
- 2019.03 : 온열텐트 철거
- 2019.11~12. : 온열텐트 추가 설치(기존 8개소 재설치, 신규 5개소 설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해당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장 전익홍	담당자	방재9급 이그린	전화	2917
-----	-------	------------	-----	----------	----	------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P - 17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6월 ~ 9월
- 사업규모 : 109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폭염 인명피해 예방 관련 취약계층 보호 및 건강 관리를 위한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1,800			21,800	21,800	
국 비							
도 비		21,800			21,800	21,800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무더위쉼터의 냉방비 비용 지원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9호
근거내용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1항.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호.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무더위쉼터 운영에 따른 에어컨 사용으로 냉방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월 10만원 한도로 무더위쉼터의 냉방비 부족액에 대하여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냉방비 지원 : 50,000원*109개소00원*4개월 = 21,8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8 : 기본계획수립
- 2019.09~2019.10 : 무더위쉼터 냉방비 전기사용료 고지서 취합 및 지원
- 2019.10~2019.11 : 결과보고 및 평가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장 전익홍	담당자	시설9급 안재현	전화	2916
-----	-------	------------	-----	----------	----	------

# [유수지 유지관리] (P - 17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2019. 12월
- 사업규모 : 유수지 2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여름철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수지(우수유출저감시설)유지관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68,000	507,200	509,500		-2,300	139,200	
국 비							
도 비							
시 비	368,000	507,200	509,500		-2,300	139,2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방재시설물 경고안내판 설치 및 보수 공사비 집행 잔액 감액
- 점검사기가 도래한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근거내용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김포한강신도시 내 에코센터 유수지와 제촌 유수지는 제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되어 2년 주기로 전문용역업체에 요청하여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합 계		=	△2,300
유수지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방재시설물 경고판 설치	= △15,500
	401-01 시설비	유수지 수문 정밀안전점검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등)	= 13,2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6. : 김포한강신도시 유수지 경고안내판 설치
- 2019.11. : 일반유수지 경고안내판 설치 예정
- 2019.11~12. : 에코센터, 제촌 유수지 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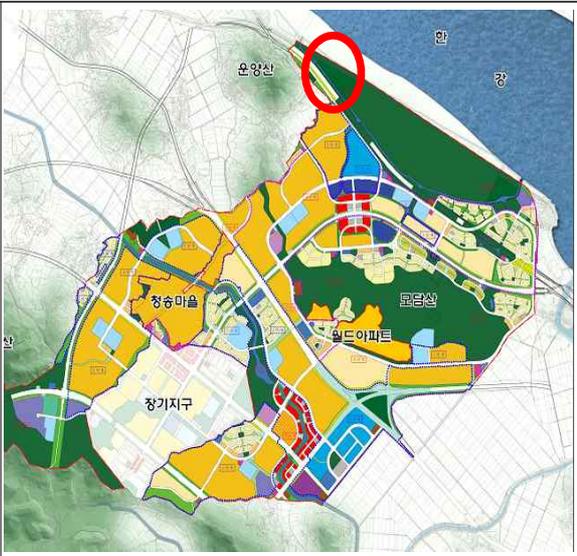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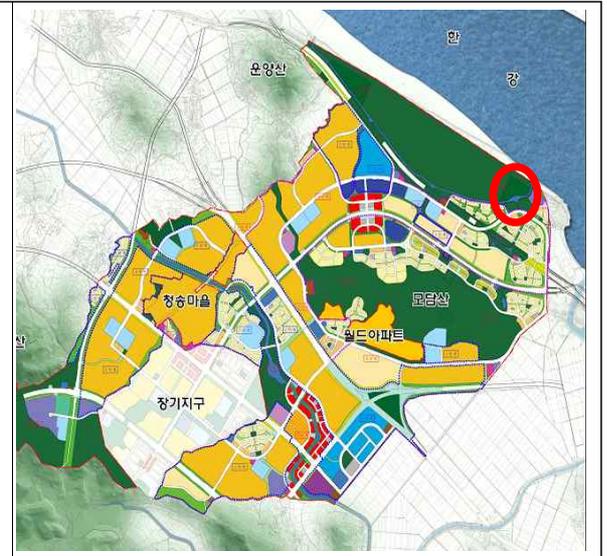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유수지 시설물 유지 및 관리 공사 · 김포시 관내 유수지 준설 공사 · 유수지 예초 및 관목전정 공사 · 김포한강신도시 내 유수지 제초 및 준설 공사	
2018년	· 풍무동 유수지 법면 보수 공사 · 고촌 유수지 수중펌프 설치 · 김포한강신도시 내 유수지 A, B지구 준설 공사 · 김포 유수지 17개소 제초 및 관목전정 공사	
2019년	· 유수지 바닥제초 및 법면 벌목제거 공사 · 유수지 3개소 퇴적토사 준설공사 · 한가람유수지 보수공사 · 청수유수지 외 2개소 보수공사 · 유수지 준설토 폐기물 용역 · 방재시설물 경고안내판 설치 · 유수지 유지관리 공사(제초)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210,400	208,405	-	1,995	
2018년	368,000	284,762	-	83,238	
2019년	509,500	266,100	-	243,400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b>위치도</b> 10,000 :1 <b>이상</b> (칼라)</p>		
<p><b>현장사진</b> (칼라)</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안전총괄과	방재시설팀장 김중훈	담당자	시설9급 윤석호	전화	2602
-----	-------	------------	-----	----------	----	------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P - 17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전역
- 사업규모 : 평가단 참석수당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진대비 시설물 자문검토 및 지진 발생 시 지진피해 시설물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400	400	2,400		-2,000	
국 비						
도 비						
시 비	2,400	400	2,400		-2,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횟수 감소 예상에 따른 참석수당 감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3항
근거내용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채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을 통하여 추진 예정인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공사의 적정성 및 보수·보강(안) 자문검토 필요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참석수당	= Δ2,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7.09 : 2019년도 공공시설물(교량) 내진성능평가용역 내진보강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 2019.07~12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2018.07.04.> “2017년 본관동 외 4개 청사 내진성능평가용역” 검증자문 실시 <2018.09.19.> “2018년도 공공시설물(교량) 내진성능평가용역” 내진보강공법 선정	
2019년	<2019.07.09.> “2018년도 공공시설물(교량) 내진성능평가용역” 내진보강공법 선정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2,400	600	-	1,800	
2019년	2,400	360	-	2,040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장 전익홍	담당자	시설9급 안재현	전화	2916
-----	-------	------------	-----	----------	----	------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80,000		80,000			80,000	
공 정 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80,000		80,000		80,0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08월 : 현장 조사 및 실시설계
- 2019. 09월 ~ 10월 : 사업 착공 및 준공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장 채낙중	담당자	행정7급 양승우	전화	2912
-----	-------	------------	-----	----------	----	------

#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P - 17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8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전역
- 사업규모 : 총 4건(내진성능평가 지원 3건, 인증수수료 지원 1건)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유도 및 지진으로 인한 민간시설 피해 최소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b>계</b>		<b>26,000</b>			<b>26,000</b>	
국 비		14,100			14,100	
도 비		2,340			2,340	
시 비		5,460			5,460	
기 타		4,100			4,100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민간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 지원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근거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하는 건축물 지원
  - 성능평가비 지원 3건(국비60%, 도비9%, 시비21%, 자부담10%)
  - 인증수수료 지원 1건(국비30%, 도비9%, 시비21%, 자부담40%)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 성능평가비 : 7,000,000원 × 3개소 - 인증수수료 : 5,000,000원 × 1개소	= 26,000 = 21,000 = 5,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7.22. : 보조금 사업 확정내시
- 2019.08~12. : 사업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해당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장 전익홍	담당자	시설9급 안재현	전화	2916
-----	-------	------------	-----	----------	----	------

#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P - 17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2019. 12월 ○ 위 치 : 김포시 일원
- 사업규모 :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집중호우 시 즉각적인 펌프장 가동으로 침수피해 최소화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668,306	1,954,875	2,354,875		-400,000	-713,431	
국 비							
도 비							
시 비	2,668,306	1,954,875	2,354,875		-400,000	-713,431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평상시 배수펌프장 단전 운영으로 전기요금 절감
- 폭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 한전으로 수전 받아 배수펌프장 가동

## □ 법적근거

근거법령	하천법	제2조(정의)
근거내용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배수펌프장, 수문 등 하천수위조절을 위한 시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채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배수펌프장은 자연재해예방의 중요한 시설물로 효율적인 관리 및 정기점검을 통한 보수·보강을 적기에 실시하여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 = Δ400,0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5~2019.10 : 배수펌프장 및 간이펌프장 전기 수전 신청
- 2019.05~2019.10 : 재해대책기간 중 배수펌프장 및 간이펌프장 수시점검
- 2019.11 : 전기휴지 및 동절기 준비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안전진단</li> <li>· 봉성2배수펌프장 체진기 점검로 도색</li> <li>· 운양배수펌프장 화장실 수리</li> <li>· 향산2배수펌프장 유압제진기 수리</li> <li>· 갈포배수펌프장 정류기 수리 및 축전기 교체</li> <li>· 배수펌프장 현황판 제작</li> <li>· 봉성2배수펌프장 에어컨 수리 및 수도배관 보수</li> <li>· 포내배수펌프장 방음재 보수</li> <li>· 갈포배수펌프장 유압밸브 보수</li> </ul>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안전진단</li> <li>· 배수펌프장 크레인 및 호이스트 점검 및 수리</li> <li>· 월드컵배수펌프장 선반랙 설치</li> <li>· 운양배수펌프장 승강기 수리 및 MOF 교체</li> <li>· 운양 및 봉성 배수펌프장 소방 설비 보수</li> <li>· 제촌 배수펌프장 피뢰기 교체</li> <li>· 배수펌프장 및 간이펌프장 유지관리 공사(제초)</li> </ul>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 용역 설계 및 발주</li> <li>· 배수펌프장 냉난방기 설치</li> <li>· 재해대책기간 중 배수펌프장 및 간이펌프장 수시점검</li> </ul>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1,994,635	1,750,148	-	244,487	
2018년	2,668,306	1,187,549	-	1,480,757	
2019년	2,354,875	683,914	-	1,670,961	6.30.일 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안전총괄과	방재시설팀장 김중훈	담당자	공업9급 김병직	전화	2603
-----	-------	------------	-----	----------	----	------

# [석탄배수펌프장 제진설비 교체사업] (P - 17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09.~2019.12. ○ 위 치 : 하성면 석탄리 804-1번지 일원
- 사업량 : 제진기 3대 교체(유압식 → 로터리식)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고장 빈도가 낮고 이물질 처리능력이 우수한 로터리식 제진기로 교체하여 집중호우시 저지대 지역 침수피해 사전예방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700,000	550,000			550,000	-150,000
국 비						
도 비						
시 비	700,000	550,000			550,000	-150,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당초 예산(재난안전 특별교부세)으로 기존 유압식 제진기 6대 중 로터리식 제진기로 3대 교체완료 나머지 유압식 제진기 3대 → 로터리식 제진기 3대 교체를 위한 사업비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하천법	제2조(정의),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근거내용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배수펌프장, 수문 등 하천수위조절을 위한 시설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국사천의 우수를 한강으로 강제 배수하는 석탄배수펌프장의 유압식 제진기(3대)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교체가 시급한 실정임
- 석탄배수펌프장 제진설비 성능 개선사업에 필요한 부족사업비 확보로 나머지 제진기 3대 (유압식 → 로터리식) 적기 교체하여 침수피해 사전예방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석탄배수펌프장 제진설비 교체사업	401-01 시설비	· 제진기 3대 교체(유압식 → 로터리식) = 550,000 W4200 × H36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250,000	700,000	550,000	0	0	550,000	0	
공 정 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1,250,000	700,000	550,000			550,0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10 : 공사착공
- 2019.12 : 공사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제진기 3대 교체 완료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700,000	0	700,000	0	
2019년	700,000	601,848	-	98,152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b>위치도</b> 10,000 :1 이상 (칼라)</p>	
<p><b>현장사진</b> (칼라)</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안전총괄과	방재시설팀장 김종훈	담당자	공업7급 박종인	전화	2601
-----	-------	------------	-----	----------	----	------

#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 성립전] (P - 17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2019. 12.월
- 사업규모 : 관내(계양천 등)하천 6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하천 불법행위 및 재해위험요인의 감시와 예방을 통하여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4,400	25,000	15,380		9,620	10,600	
국 비							
도 비	14,400	25,000	15,380		9,620	10,600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지급대상자 증가(5명⇒8명), 활동원 장비 지원 및 상해보험 가입에 따른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하천법	제46조
근거내용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하천 내 불법행위 감시 및 신고를 통해 깨끗한 하천 유지
- 하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감시하고 예방하여 안전한 하천 유지
- 감시원(8명)의 적극 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근무복 등)구입 및 안전사고 발생 대비를 위한 상해보험 가입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합계		= 25,000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인건비(8명) : 24,030,000원 = 24,030	
	사무관리비 201-01	· 활동장비 구입 : 400,000원 = 400	
	공공운영비 201-02	· 보험료: 570,000원 = 57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 : 친환경명예감시원 위촉 및 활동
- 2019.02 : 활동원 증원(5명 ⇒ 8명)
- 2019.03 : 활동장비 구입 및 상해보험 가입
- 2019.12. : 활동실적 제출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쓰레기 투기 적발 약100건, 불법경작 계도 약35건, 불법낙시 계도 약30건, 위해식물제거 약 5건	
2019년	쓰레기 투기 적발 30건, 불법광고물 신고 3건, 불법낙시 신고 20건, 시설물 파손 신고 2건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14,400	13,200	0	1,200	-
2019년	15,380	9,816	0	5,564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장 임영순	담당자	행정8급 오선미	전화	2924
-----	-------	------------	-----	----------	----	------

# 구래동천 정비사업 (P - 17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01.~2020.12. ○ 위 치 : 양촌읍 구래리~양촌읍 유현리
- 사업량 : 하천개수 1.83km, 교량 8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미개수 하천의 개수사업 실시로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재해를 예방.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800,000	4,172,000	3,172,000		1,000,000	372,000	
국 비	1,900,000	1,586,000	1,586,000			-314,000	
도 비							
시 비	1,900,000	2,586,000	1,586,000		1,000,000	686,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보상비 증액 및 공사비 증가(물가 및 인건비 상승)로 총 사업비 부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소하천정비법	제8조
근거내용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7.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하천단면 및 하천횡단 구조물의 규모 미달로 저지대 하천범람 등 재해발생이 높아 하천개수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
- 2019년 용지보상(수용재결) 및 공사에 필요한 부족 사업비 확보로 적기 준공 도모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구래동천 정비공사	401-01 시설비	· 용지보상비 부족분 : 500,000천원	= 500,000
		· 공사비 증액분 : 500,000천원	= 500,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1,311,000	5,544,000	4,172,000	3,172,000	0	1,000,000	1,595,000		
공 정 별	설계비	240,000	240,000	0	0	0	0	0	
	보상비	6,400,000	5,304,000	1,096,000	596,000	0	500,000	0	
	공사비	4,421,000	0	2,826,000	2,576,000	-250,000	500,000	1,595,000	
	감리비	250,000	0	250,000		250,000	0	0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6.12 : 구래동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6.12 :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공고(김포시공고 제2016-1734호)
- 2019.03 : 공사착공
- 2020.12 : 공사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실시	
2018년	-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실시	
2019년	- 공사 착공 및 편입 토지 수용재결 절차 진행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1,619,447	1,609,950	9,497	0	
2018년	3,809,497	3,040,377	769,120	0	
2019년	3,941,120	3,031,550		909,570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b>위치도</b> 10,000 :1 이상 (칼라)</p>	
<p><b>현장사진</b> (칼라)</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장 임영순	담당자	시설7급 윤보람	전화	2922
-----	-------	------------	-----	----------	----	------

# [국가하천 유지보수] (P - 17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9. ~2019. 12
- 사업규모 : 제방보수 L=200m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제방보수를 통한 치수 기능 향상으로 홍수 시 침수 및 인명피해 예방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65,000	255,000		65,000	190,000	90,000
국 비	165,000	255,000		65,000	190,000	90,000
도 비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국가하천 제방보수에 따른 설계비 및 시설비 예산요구

## □ 법적근거

근거법령	하천법	제27조 제6항
근거내용	⑥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type="checkbox"/>	자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뒷채움 잡석 유실에 따른 호안머리공 파괴 및 천단 들뜸으로 인하여 제방보수가 필요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 운양배수펌프장 토출부 제방 보수공사 · 실시시설용역비 : 20,000,000원 = 20,000 · 시공비 : 850,000원/m*200m = 170,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55,000		255,000		65,000	190,000		
공 정 별	설계비	20,000	20,000			20,000		
	보상비							
	공사비	235,000	235,000		65,000	170,0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8.06. : '19년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추경예산 배정알림 및 교부신청 요청(道 하천과)
- 2019.08.07. : 자금교부 신청서 제출
- 2019.09~2019.10 : 실시설계용역
- 2019.10 : 공사착공
- 2019.12 : 공사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고포천 표지판 설치공사 - 고포천 제방도로 포장공사 1차 - 고포천 제방도로 포장공사 2차 - 고포천 수목제거 공사	
2018년	- 고포천 제방도로 포장공사 1차 - 고포천제방도로 포장공사 2차 - 한강둔치 친수시설 정비공사 - 김포대교 안전표지판 설치공사 - 고포천 제방도로 블라드 설치	
2019년	- 김포대교 안전표지판 설치공사 - 한강둔치 친수시설 정비공사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97,000	93,412	0	3,588	
2018년	165,000	84,698	80,000	302	
2019년	145,000	96,596	0	48,404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b>위치도</b> 10,000 :1 이상 (칼라)</p>	
<p><b>현장사진</b> (칼라)</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장 임영순	담당자	시설7급 정윤희	전화	2923
-----	-------	------------	-----	----------	----	------

#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 경비 지원] (P - 17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7. ~ 12. ○ 위 치 : 김포시 일원
- 사업규모 : 연 6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민간전문가 참여훈련을 통해 민방위훈련 내실화 및 시민에게 도움되는 훈련 실시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500			4,500	4,500	
국 비							
도 비		4,500			4,500	4,500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민방위훈련 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내실 있는 훈련을 진행하고자 함.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민방위법	제25조 제2항
근거내용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민방위 훈련 시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한 훈련 내실화
- 소화기, 심폐소생술 애니 등 교보재 활용으로 화재 및 재난대비 실전 체험훈련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201-01 사무관리비	·소화기 및 심폐소생술 애니 : 500,000원*3월 = 1,500	
		· 민간전문가 컨설팅 : 200천원(2시간)*5명(5개소)*3회 = 3,000 ※ 1시간기준 100천원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7월 : 훈련계획수립
- 2019. 8월 ~ 10월 : 8월(지역특성화훈련), 9월·10월(전국단위 훈련)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안전총괄과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	담당자	행정7급 나태웅	전화	2361
-----	-------	---------------	-----	----------	----	------

#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P - 17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9 ~ 12월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대피시설 22개소, 경보시설 19개소, 급수시설 1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민방위 비상사태발생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 (평시 회의실, 체육시설, 무더위 쉼터 등 편의시설 적극 운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92,120	116,180	106,180		10,000	24,060
국 비						
도 비						
시 비	92,120	116,180	106,180		10,000	24,06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민방위 시설 공공요금 및 수리·수선비 부족분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민방위 기본법	제4조 제1항
근거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채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접적지역(통진·대곶·월곶·하성)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정기 및 수시 점검 보수)
- 월 1회 이상 민방위 비상경보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로 비상대비태세 확립
- 동절기 동파대비 및 분기별 수질검사 의뢰, 비상급수시설 11개소 유지관리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통신요금 : 1,600,000원*4월 = 6,400	
		정기점검 : 408,000원*4월 = 1,632	
		수질검사 채수 운반비 : 408,000원*2회 = 816	
		기타 수리수선 : 1,152,000원 = 1,152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09 ~ 12 : 대피·급수·경보시설 공공요금 납부 및 정기점검, 유지보수 집행(수질검사 포함)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민방위 통합보관창고 바닥 보수 - 농업기술센터 비상급수시설 누수 보수 -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지급 및 관정청소(풍무중앙공업, 농업기술센터) - 조강1리 주민대피시설 방수 공사 및 석탄4리 등 3개소 주민대피시설 정화조 펌프 재설치 등	
2018년	- 주민대피시설 민방위기 교체(21개소) - 포내리 주민대피시설 계단실 정비 - 조강1·2리 주민대피시설 조명기구 교체 및 시암2리 침수 복구 공사 등 - 석탄4리 비상급수시설 자동제어판넬 설치 등 -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지급 및 관정청소(양촌읍, 마곡3리) - 경보시설 단말기 축전지 교체 - 민방위 재난실전훈련센터 LED 스크린 설치 등	
2019년	-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지급 및 관정청소(하성면, 마조리 마을회관) - 경보시설 단말기 축전지 교체(8개소) -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수리 등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127,080	126,977	-	103	
2018년	92,120	89,470	-	2,650	
2019년	106,180	80,672	-	25,508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안전총괄과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흥택	담당자	행정7급 오윤화	전화	2363
-----	-------	---------------	-----	----------	----	------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도 로 건 설 과**





# [시도5호선 도로 개설사업] (P - 17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9. ○ 위 치 : 김포시 사우동 ~ 고촌 향산IC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1.2km, B=17.5m(4차로)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연결로 교통여건 개선 및 균형적인 지역발전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1,900,000	1,200,000	0	700,000	1,900,000	
국 비							
도 비							
시 비		1,900,000	1,200,000		700,000	1,900,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관계기관 협의의견인 도로표지판 등 도로시설물 설치 및 주거지역 도로변 소음저감시설 설치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도로법	제25조, 제44조
근거내용	제88조 도로개설 관련 도로구역결정 제96조 사업부지 보상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5.11월	2008.10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원도심과 김포한강로를 연결하여 국도48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함으로써 상습 정체 해소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시도5호선 도로개설사업	401-01 시설비	· 도로시설물(표지판, 가로등 등) 설치공사비	= 500,000
		·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비	= 200,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6,900,000	25,000,000	1,900,000	1,200,000	0	700,000		
공 정 별	설계비	250,000	250,000					
	보상비	9,200,000	9,200,000					
	공사비	16,150,000	14,500,000	1,650,000	950,000	700,000		
	감리비	1,200,000	1,000,000	200,000	200,000			
	부대비	100,000	50,000	50,000	50,000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0. 01. :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 2014. 02. : 실시설계(재설계)용역 착수
- 2016. 01. : 도로구역 결정 [김포시 고시 제2016-13호]
- 2017. 03. : 공사착공
- 2019. 05. : 공사준공
- 2019. 10. ~ 12. : 보완공사 추진(관계기관 협의조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도로구역결정 . 보 상 륜 : 40%	
2018년	. 보 상 륜 : 80% . 2017.03. : 공사착공	
2019년	. 보 상 륜 : 100% . 공 정 륜 : 100%(토목분야)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17,396,639	3,030,268	14,366,371	-	
2018년	14,366,371	9,754,179	4,612,192	-	
2019년	5,812,192	5,090,220	-	-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위치도 10,000 :1 이상</p>	
<p>현장사진</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건설과	도로건설팀장 이영종	담당자	시설7급 박준배	전화	2436
-----	-------	------------	-----	----------	----	------

# [마곡~시암간 도로확포장공사] (P - 17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 2020.
- 사업규모 : 도로확포장 L=2.5km, B=15m(2차로)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협소한 도로 개선하여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균형적인 지역개발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4,675,000	3,353,000	2,934,000	0	419,000	-1,322,000
국 비	3,272,000	2,347,000	2,347,000			-925,000
도 비						
시 비	1,403,000	1,006,000	587,000		419,000	-397,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본 사업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국비70%,시비30%)이며,
- 국비(2,347,000천원)대비 시비(1,006,000천원) 부족분(419,000천원)을 요구하는 사항임.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13조
근거내용	제9조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제13조 토지 등의 수용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의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5.11월	2006.10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하성면시가지와 중소기업 밀집지역 및 국지도 56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기업체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망 확충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 국비대비 시비 부족분 예산 확보하여 도로 확포장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함.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마곡-시암간 도로확포장사업	401-01 시설비	· 공사비 L=2.5km, B=15m = 419,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3,500,000	28,225,000	3,353,000	2,934,000	0	419,000	11,922,000	
공 정 별	설계비	654,960	654,960					
	보상비	25,000,000	20,006,040				4,993,960	
	공사비	17,000,000	7,564,000	2,983,000	2,564,000		419,000	6,453,000
	감리비	500,000		370,000	370,000			130,000
	부대비	345,040						345,040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07. 02. : 실시설계
- 2009. 06. : 노선지정 [김포시 공고 제2009-643호]
- 2009. 06. : 보상착수
- 2016. 05. : 노선지정(변경) [김포시 공고 제2016-1383호]
- 2017. 07. : 공사착공
- 2020. 06. : 공사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보 상 률 : 87% · 2017.07. : 공사착공	1구간
2018년	· 보 상 률 : 99% · 공 정 률 : 22%	1구간
2019년	· 보 상 률 : 100% · 공 정 률 : 41%	1구간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5,634,109	2,022,346	3,611,763	-	
2018년	8,286,763	2,936,905	5,349,858	-	
2019년	7,423,610	3,067,341	-	-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위치도 10,000 :1 이상</p>	
<p>현장사진</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건설과	도로건설팀장 이영종	담당자	시설7급 최호선	전화	2437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시도미지급용지 보상	401-01 사설비	· 소송 확정에 따른 도로 사용료 지급 = 65,000 · 도로구간 편입용지 5필지 보상 = 165,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미지급용지 보상금 지급 : 10필지 697.7㎡ 111,284천원 지급 · 토지사용료 지급 : 24필지 5,547㎡ 83,586천원 지급 · 감정평가 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지급 : 4,465천원 지급	
2018년	· 미지급용지 보상금 지급 : 8필지 1,017㎡ 180,648천원 지급 · 토지사용료 지급 : 25필지 5,602㎡ 65,662천원 지급 · 감정평가 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지급 : 3,690천원 지급	
2019년	· 미지급용지 보상금 지급 : 12필지 1,803㎡ 591,100천원 지급 · 토지사용료 지급 : 28필지 6,292㎡ 35,294천원 지급 · 감정평가 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지급 : 3,150천원 지급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200,000	199,335	-	665	
2018년	250,000	250,000	-	-	
2019년	630,000	629,544	-	456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건설과	도로보상팀장 장은길	담당자	행정7급 손승원	전화	2433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건설산업 관련 위원회 수당	201-01 사무관리비	· 위원회 수당 : 80,000원 * 14.17명 * 2회 = 2,268	-452
건설산업 관련 자문료	201-01 사무관리비	· 자 문 료 : 113,000원 * 4명 * 1회 = 452	부기명 추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2017. 3. 17 : 2017년 제1차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정기회의) · 풍무도서관 건립공사 설계자문 · 김포시 보건소 별관 증축공사 설계자문	
2018년	· 2018. 11. 13 : 2018년(정기회의)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 하성면 작은도서관(복지관) 건축설계용역 설계자문	
2019년	· 2019. 4. 22 : 2019년(정기회의)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3,360	1,120	0	2,240	
2018년	3,840	400	0	0	
2019년	2,720	320		2,400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김성철	담당자	행정7급 서국원	전화	2426
-----	-------	------------	-----	----------	----	------

# [ 시도12호선(전류~원산간) 도로확포장사업 ] (P - 17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 ○ 위 치 :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43-2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도로확포장 L=3.1km, B=20m(4차로)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김포~파주간 고속도로 구간과 연결되는 시도12호선의 확장을 통한 IC건설 여건 마련으로 교통량 분산 및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500,000	300,000			300,000	-200,000
국 비						
도 비						
시 비	500,000	300,000			300,000	-200,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본 사업 관련 기 추진중인 「시도12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수반되는 ‘교통안전 진단, 설계VE, 타당성평가 용역’ 으로 관련법률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교통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34조 / 시행령 제75조 / 제18조
근거내용	교통안전법 제34조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8조 타당성평가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적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7.11월	2017.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19년 2월 착공한 김포~파주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IC 건설의 여건 마련으로 지역발전 및 교통편의 증진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시도12호선(전류~원산간) 도로확포장사업	401-01 시설비	· 도로개설 L=3.1km, B=20m(4차로) 설계용역비 = 300,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0,000,000	500,000	300,000	0	0	300,000	39,200,000	
공 정 별	설계비	800,000	500,000	300,000		300,000		
	보상비	21,200,000					21,200,000	
	공사비	16,500,000					16,500,000	
	감리비	1,400,000					1,400,000	
	부대비	100,000					100,000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7.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 0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0. 03. : 실시계획 인가
- 2020. 04. : 보상 착수
- 2020. 10. : 공사 착공
- 2022. 12. : 공사 완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2017. 11.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 완료	
2018년	· 2018. 06. 설계용역 착수	
2019년	· 2019. 06. 기본설계 완료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	-	-	-	
2018년	500,000	93,612	406,388	-	
2019년	406,388	340,121	-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위치도 10,000 : 1 이상</p>	
<p>현장사진</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건설과	도로건설팀장 이영종	담당자	시설7급 박준배	전화	2436
-----	-------	------------	-----	----------	----	------

# [갈산~군하간 도로확포장사업] (P - 17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
- 위 치 :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383-2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도로확포장 L=0.95km, B=25m(4차로)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월곶면 갈산사거리 인근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정체 현상이 발생하여 도로확장을 통한 도로이용자의 불편 및 민원사항 해소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30,000	4,700,000			4,470,000	
국 비						
도 비						
시 비	230,000	4,700,000			4,470,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본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기 추진중인 「갈산~군하간 도로 확포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따라 보상비를 확보하여 적기에 사업 추진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근거내용	제88조 도로개설관련 실시계획 인가 제96조 사업부지 보상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적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7.11월	2017.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월곶면 갈산사거리 이용차량의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가 발생하여 도로확장을 통한 교통 불편사항 및 민원사항의 해소가 필요한 실정임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갈산~군하간 도로확포장사업	401-01 시설비	· 도로개설 L=0.95km, B=25m(4차로) 보상비 = 4,700,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2,000,000	230,000	4,700,000	0	0	4,700,000	7,070,000	
공 정 별	설 계비	230,000	230,000					
	보상비	6,300,000		4,700,000		4,700,000	1,600,000	
	공사비	5,000,000					5,000,000	
	감리비	400,000					400,000	
	부대비	70,000					70,000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7.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 0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9. 11. : 실시계획 인가
- 2019. 12. : 보상 착수
- 2020. 08. : 공사 착공
- 2022. 06. : 공사 완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2017. 11.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 완료	
2018년	· 2018. 06. 설계용역 착수	
2019년	· 2019. 06. 기본설계 완료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	-	-	-	
2018년	230,000	28,683	201,317	-	
2019년	201,317	67,430	-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위치도 10,000 : 1 이상</p>	
<p>현장사진</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건설과	도로건설팀장 이영종	담당자	시설7급 박준배	전화	2436
-----	-------	------------	-----	----------	----	------

#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P - 177)

##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19.09. ~ 2020.07. ○ 위 치 : 김포시 전역
- 용역규모 : 김포시 행정구역 내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를 대상으로 함
- 용역목적 및 기대효과 : 읍면지역의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65,000	0	0	65,000	65,000	
국 비							
도 비							
시 비		65,000			65,000	65,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본 용역은 기 추진중인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 용역」에 수반되는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 으로, 관련법률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 법적근거

근거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근거내용	(법)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시행령)제7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 <input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type="checkbox"/>	자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input type="checkbox"/>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 필요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401-01 시설비	·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변경)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 65,000 L = 286.1km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09. : 용역착수
- 2020. 07. : 용역완료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건설과	도로건설팀장 이영종	담당자	시설7급 최호선	전화	2437
-----	-------	------------	-----	----------	----	------

# [대곶 도시계획도로(중로 3-2호선) 개설사업] (P - 17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2.
- 위 치 : 김포시 대곶면 울생리 266-3 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0.95km, B=12m(2차로)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주거지 및 공장 밀집지역의 열악한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 및 이용차량의 교통 불편을 해소, 보행장 안전 및 원활한 물류 수송에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50,000			150,000	
국 비						
도 비						
시 비		150,000			150,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해당도로는 2004. 10월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이며, 대곶면 울생리 주거지 및 공장 밀집지역의 협소한 도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2018. 12월 확정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용역비 반영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8조 및 제96조
근거내용	제85조 도로개설관련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제88조 도로개설관련 실시계획 인가 제96조 사업부지 보상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8.11월	2019.8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주거지 및 공장 밀집지역의 열악한 도로를 정비하여 지역 주민 및 이용차량의 교통 불편해소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개설이 시급함.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대곶 도시계획도로(중로3-2호선) 개설사업	401-01 시설비	· 도로개설 L=0.95km, B=12m(2차로) 설계용역비 = 150,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7,150,000	0	150,000	0	0	150,000	7,000,000	
공 정 별	설계비	150,000	150,000			150,000		
	보상비	4,500,000					4,500,000	
	공사비	2,500,000					2,500,0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 12. :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 2019. 08. : 투자심사 완료
- 2019. 1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1. 01. : 보상 착수
- 2021. 06. : 공사 착공
- 2022. 12. :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해당없음	
2018년	· 2018. 11.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 12. 단계별집행계획(변경) 수립	
2019년	· 2019. 02.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	-	-	-	
2018년	-	-	-	-	
2019년	-	-	-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b>위치도</b> 10,000 :1 이상</p>	
<p><b>현장사진</b></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건설과	도로건설팀장 이영종	담당자	시설7급 박준배	전화	2436
-----	-------	------------	-----	----------	----	------

# [전문건설업체 관리] (P - 17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01. ~ 2019.12.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전문건설업 등록증 400개, 등록수첩 100개 제작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전문건설업체 관리 효과 증진 및 민원해소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000			1,000	1,000	
국 비							
도 비							
시 비		1,000			1,000	1,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성격이 소모성이라 보유하고 있던 재고 소진하여 수량 부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1항, 제3항
근거내용	제9조의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및 기재사항변경, 재발급에 사용되는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작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전문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제작	201-01 사무관리비	· 등록증 : 300원*400개 = 120 · 등록수첩 : 8,800원*100개 = 88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09. ~ 2019. 12. :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구매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김성철	담당자	행정9급 한선영	전화	2428
-----	-------	------------	-----	----------	----	------

# [양수장 유지관리] (P - 17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2 ~ 2019. 12. ○ 위 치 : 관내 저수지 및 양수장
- 사업규모 : 저수지 6개소, 양수장 20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 대벽저수지 내 정화활동(불법납시 행위 단속 등)을 통하여 저수지를 지속적이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 도모
  - 농업생산기반시설 시설정비(양수장, 저수지 유지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29,832	237,508	131,508	14,000	92,000	107,676	
국 비							
도 비							
시 비	129,832	237,508	131,508	14,000	92,000	107,676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대벽저수지 내 불법납시행위를 근절 시키고자 농업용저수지 유지 관리비 확보
- 노후 양수장 및 저수지 유지관리를 위한 민원사항을 해결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10조
근거내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산단지 조성 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예산요구 필요성
  -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벽저수지 내 불법납시행위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 시켜 저수지를 지속적이고 쾌적하게 유지관리를 하고자 함.
  - 노후된 양수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결하여 안전하게 양수장 유지관리를 하고자함
  - 저수지 보수보강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 확보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대벽저수지 불법남시행위 단속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86,538원*2명*13주*4일 = 9,000	
양수장 전기요금	201-02 공공운영비	· 전기요금 : 1,500천원 * 2개월 = 3,000	
양수장 및 저수지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양수장 정비 : 15,000천원 * 2개소 · 보구곶저수지 보수보강 : 50,000천원 * 1개소 = 80,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공 정 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237,508	237,508	131,508	14,000	92,0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09. ~ 2019. 12. : 대벽저수지 불법남시행위 단속 및 양수장, 저수지 유지관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양수장 유지보수(하무양수장 외 5개소), 내하력 용역 준공 등	
2018년	양수장 유지보수(포내1리 양수장 외 2개소), 저수지 보수공사 착공(고막저수지 외 3개소 등)	
2019년	양수장 유지보수(포내리 양수장 시설교체 공사 외 1개소), 저수지 환경정비사업 등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145,284	115,308	0	29,975	
2018년	129,832	105,960	0	23,872	
2019년	145,508	97,568	-	47,940	6,30.일 기준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위치도 10,000 :1 이상</p>	
<p>현장사진</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건설과	지역개발팀장 이무영	담당자	시설9급 설광섭	전화	2431
-----	-------	------------	-----	----------	----	------

# [농업 및 마을기반시설 유지관리] (P - 17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01. ~ 2019.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소규모 마을 및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농로, 용·배수로, 마을안길 등)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노후된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보수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400,000	2,140,000	800,000	1,000,000	340,000	740,000
국 비						
도 비						
시 비	1,400,000	2,140,000	800,000	1,000,000	340,000	740,000 연례반복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여름철 집중호우시를 대비하여 농업 및 마을기반시설 유지 관리비 확보
- 주민불편 민원사항 업무추진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10조
근거내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산단지 조성 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채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input type="checkbox"/>	자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자체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예산요구 필요성
  - 노후 파손된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하여 농업생산력을 증대하고, 열악한 마을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배수로 정비	401-01 시설비	· 배수로 정비 80,000원 × 875m = 70,000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	401-01 시설비	· 농로 정비 130,000원 × 538m = 70,000	
연간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 연간단가 계약(144공정) = 200,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b>계</b>	<b>2,140,000</b>		<b>2,140,000</b>	<b>800,000</b>	<b>1,000,000</b>	<b>340,000</b>		
공 정 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2,140,000	2,140,000	800,000	1,000,000	340,0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09.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2019. 10. : 공사착공
- 2019. 12. : 공사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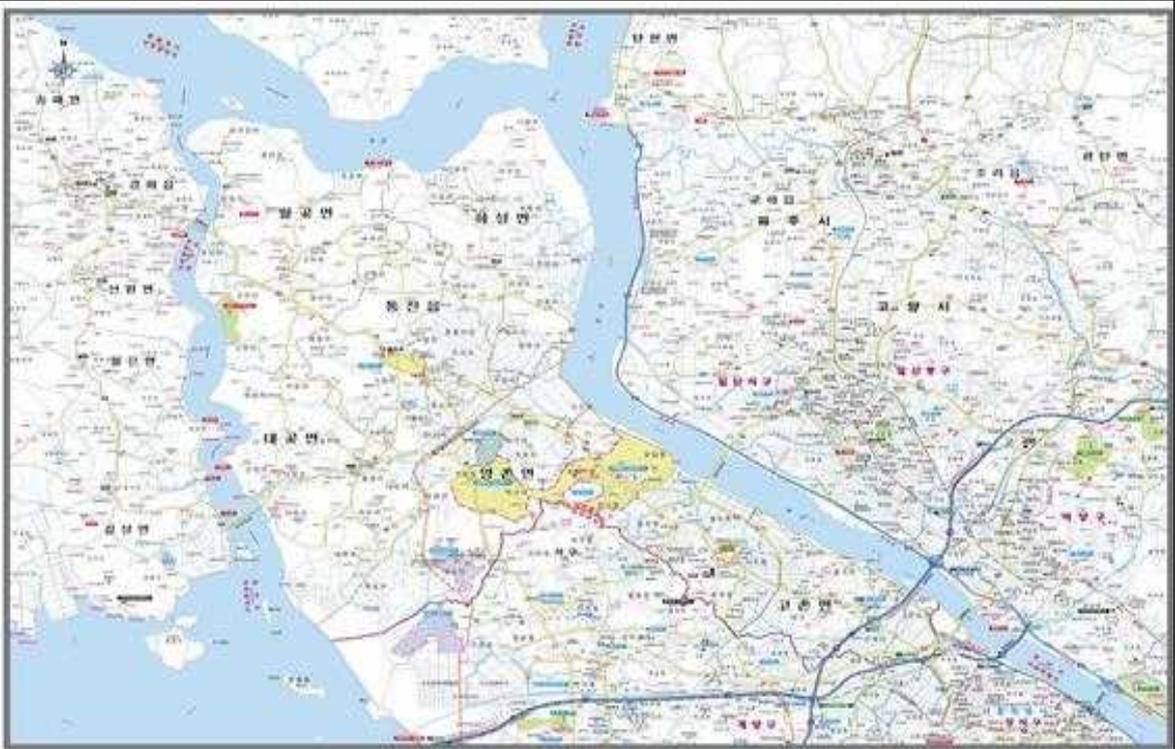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구래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소규모 사업 41건	
2018년	고양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등 소규모 사업 43건	
2019년	장기본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외 16건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1,230,000	1,086,739	100,680	42,870	
2018년	1,400,000	1,246,254	127,135	26,610	
2019년	1,800,000	816,508	-	983,492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위치도 10,000 :1 이상</p>	
<p>현장사진</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건설과	지역개발팀장 이무영	담당자	시설8급 오선경	전화	2429
-----	-------	------------	-----	----------	----	------

# [마을회관 관리] (P - 17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9 ~ 2019. 12. ○ 위 치 : 도사4리 마을회관 외4개소
- 사업규모 : 유지보수 5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 마을회관 환경개선으로 주민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숙원 해소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47,000	310,000	200,000	-	110,000	-37,000	
국 비							
도 비							
시 비	347,000	310,000	200,000	-	110,000	-37,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마을회관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 주민불편 민원사항 업무추진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근거내용	김포시장은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역 주민 간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의 신축, 증축, 재건축 또는 보수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예산요구 필요성
  - 마을회관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마을회관 관리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도사4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 30,000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양곡7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담장공사] = 14,000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누산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리모델링] = 30,000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구래4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방수공사] = 21,000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흥신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지붕공사] = 15,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공 정 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310,000		310,000	200,000	110,0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09. ~ 2019 .12. : 마을회관 보수공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가현2리 마을회관 유지보수 외 18개소	
2018년	가현3리 마을회관 유지보수 외 10개소	
2019년	유현1리 마을회관 개축공사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612,686	251,494	349,720	11,472	
2018년	955,137	730,456	-	224,681	
2019년	200,000	-	-	-	

□ 위치도 및 현장사진(도사4리)

<p><b>위치도</b> 10,000 :1 이상</p>			
<p><b>현장사진</b></p>			

□ 위치도 및 현장사진(양곡7리)

위치도  
10,000 :1  
이상



현장사진



□ 위치도 및 현장사진(부산리)

<p>위치도 10,000 :1 이상</p>	
<p>현장사진</p>	

□ 위치도 및 현장사진(구래4리)



□ 위치도 및 현장사진(홍신리)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건설과	지역개발팀장 이무영	담당자	시설9급 설광섭	전화	2431
-----	-------	------------	-----	----------	----	------

# [해병대 2사단 진입로 확장공사] (P - 17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04. ~ 2020.06. ○ 위 치 : 양촌읍 대포리 21-3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L=0.22km, B=20m (2차로 → 4차로)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도로를 확장하여 해병대 2사단 및 인근 주민 및 공장의 주행환경 개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720,000		720,000	720,000	
국 비						
도 비		262,640			262,640	
시 비		457,360		720,000	-262,640	457,36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시비 확보 이후 도비보조사업인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도50%, 시50%)에 선정됨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
근거내용	도지사는 군부대 주둔 등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불편 해소 및 민·군 간 상호협력을 위해 시·군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피해 예방 2. 민·군 갈등 해소를 위한 상호교류 3.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 4. 그 밖에 접경지역 군부대가 제안하는 사업 가운데 도지사가 접경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단, 군부대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type="checkbox"/>	중기지방 채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type="checkbox"/>	자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예산요구 필요성
  - 해병대 2사단 진입로는 1983년 군사용 도로로 개설되었으나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현황도로로서 차량통행 증가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병2사단에서 진입로 확장을 요청한 사항으로 지역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군부대 작전 차량 이동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해병대 2사단 진입로 확장공사	401-01 시설비	. 공사비(토목, 전기 등) ≙ 695,000 . 설계비 ≙ 25,000	= 72,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720,000		720,000		720,000			
공 정 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720,000	720,000		720,0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06.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2019. 10. : 공사착공
- 2020. 06. : 공사준공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건설과	지역개발팀장 이무영	담당자	시설8급 오선경	전화	2429
-----	-------	------------	-----	----------	----	------

#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P - 17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위 치 : 도로명주소 사용
- 사업규모 :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도비보조사업(수리시설정비, 농로확포장, 영농한해특별대책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6,000			6,000	
국 비						
도 비						
시 비		6,000			6,000	
기 타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2018년도 도비보조사업(수리시설정비, 농로확포장, 영농한해특별대책지원)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 하고자 함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18년도 도비보조사업(수리시설정비, 농로확포장, 영농한해특별대책지원)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 하고자 함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802-01 시·도비보조금반환금	· 수리시설정비 집행잔액	= 4,650
		· 수리시설정비 이자	= 580
		· 농로확포장 집행잔액	= 510
		· 농로확포장 이자	= 85
		· 영농한해특별대책지원 이자	= 175

##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09. :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건설과	지역개발팀장 이무영	담당자	시설8급 오선경	전화	2429
-----	-------	------------	-----	----------	----	------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도 로 관 리 과**





# [도시계획도로 재포장공사] (P - 18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09월 ~ 12월
- 위 치 : 풍무로(유현사거리~국도48호선)
- 사업규모 : 절삭재포장 300a(L=1.5km, B=19.5m)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노면상태가 불량한 풍무로 구간에 재포장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b>계</b>	<b>500,000</b>	<b>1,200,000</b>	<b>700,000</b>		<b>500,000</b>	<b>700,000</b>	
국 비							
도 비							
시 비	500,000	1,200,000	700,000		500,000	700,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관내 도시계획도로 구간 중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한 재포장공사 필요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도로법	제31조 제1항
근거내용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8.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풍무로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풍무2지구 도로 복구 시기에 맞추어 재포장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도로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절삭 재포장공사(a=300a) = 500,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700,000	500,000	1,200,000	700,000		500,000	
공정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1,700,000	500,000	1,200,000	700,000		500,0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9. ~ 2019.10. :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 2019.11. ~ 2019.12. : 공사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김포한강3로 재포장공사 767a	
2018년	- 봉화로, 사우중로 등 절삭재포장 217a	
2019년	- 도시계획도로(중봉로) 절삭재포장 340a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1,100,000	1,063,374		36,626	
2018년	500,000	492,691		7,309	
2019년	700,000	672,625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b>위치도</b></p>	
<p><b>현장사진</b></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장 오현철	담당자	시설7급 임수진	전화	2784
-----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계	226,800
제설작업용 민간장비 임차	401-01 시설비	· 15톤 덤프트럭 : 7,000,000원 * 7대 * 3월 = 147,000	
		· 15톤 덤프트럭 : 700,000원 * 7대 * 14일 = 68,600	
		· 6㎡ 굴삭기 : 800,000원 * 1대 * 14일 = 11,200	

## □ 사업 추진계획

- 2019.10. : 민간장비 임차 용역 입찰 및 계약
- 2019.12. ~ 2020.03. : 설해대책기간 민간장비 임차 운용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 민간장비 임차 - 임차기간 : 2016.11.15.~2017.03.15.(4개월) - 임차장비 : 15톤 덤프트럭, 포크레인 - 임차방법 : 일대	
2017년	- 민간장비 임차 - 임차기간 : 2017.11.15.~2018.03.15.(4개월) - 임차장비 : 15톤 덤프트럭14대, 포크레인 - 임차방법 : 월대, 시간대	
2018년	- 민간장비 임차 - 임차기간 : 2018.11.15.~2019.03.15.(4개월) - 임차장비 : 15톤 덤프트럭20대, 굴삭기 1대 - 임차방법 : 월대, 시간대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150,000	125,312		24,688	
2017년	250,000	250,000			
2018년	550,000	148,000	402,000		사업기간 : '18.11~'19.3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환경팀장 연구환	담당자	행정7급 정희선	전화	2778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2019. 10. : 제설제 포대 절개장치 교체 및 수리

□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환경팀장 연구환	담당자	행정7급 정희선	전화	2778
-----	-------	------------	-----	----------	----	------

# [과속방지시설 정비] (P - 18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09월 ~ 12월
- 위 치 : 관내 주요도로
- 사업량 : 과속방지시설 재도색 50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과속차량 속도 저감 재도색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65,000	65,000	50,000	-	15,000	0	
국 비							
도 비							
시 비	65,000	65,000	50,000	-	15,000	0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도로법	제50조
근거내용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8.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 교통량 증가에 따른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민원 증가
- 개설도로 증가로 인한 과속차량으로 인한 과속방지시설 설치 민원 요구 증대
- 기설치된 약 1,000개소의 과속방지턱의 재도색 및 시설기준 미비 대상 재정비 필요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계	= 15,000
과속방지시설 설치 및 정비	401-01 시설비	과속방지시설 재도색 : 300,000원 * 50개소	= 15,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65,000		65,000	50,000	-	15,000		
공 정 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65,000	65,000	50,000	-	15,0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9. ~ 10. : 설계 및 공사 발주
- 2019.10. ~ 12. : 정비 공사 시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 재도색 26개소, 과속방지턱 48개소, 철거 3개소 정비	
2017년	- 재도색 20개소, 가상방지턱 5개소, 과속방지턱 46개소, 철거 4개소 정비	
2018년	- 재도색 23개소, 가상방지턱 9개소, 과속방지턱 54개소, 철거 3개소 정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50,000	45,185	-	4,815	
2017년	40,000	33,428	-	6,572	
2018년	100,000	98,000	-	2,00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환경팀장 연구환	담당자	행정7급 정희선	전화	2778
-----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도로유지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계	30,000
		· Tilt Rotator Gp컨트롤 시스템 1set	= 25,000
		· Grip Assy(집게) 1set	= 5,000

## □ 도로보수용 장비 사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장 오현철	담당자	기계운영6급 이근배	전화	2787
-----	-------	------------	-----	------------	----	------

# [제설장비 구입] (P - 18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09월 ~ 11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주요도로
- 사업량 : 자동염수살포장치 11대, 15톤 살포기 및 제설삽날 각 8대, 톤백 제설제 자동절개장치 1대 구매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제설장비를 추가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환경 및 도로안전 확보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997,500	4,617,500	1,250,000	1,260,000	2,107,500	2,620,000	
국 비							
도 비							
시 비	1,997,500	4,617,500	1,250,000	1,260,000	2,107,500	2,620,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민간임차 덤프트럭 증차에 따른 15톤 살포기 및 제설삽날 각 8대, 굴삭기 장착용 제설제 포대 자동절개장치 1대 추가확보 필요
- 교통량이 많고 제설장비 투입이 어려운 고갯길, 교량 등에 대해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한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추가 설치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도로법	제31조 제1항
근거내용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8.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 김포한강로, 지방도356호선, 국지도56호선, 국지도98호선, 도시계획도로 등 제설취약지역에 대해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추가 설치하여 신속한 제설 가능
- 구래리 전진기지 배치용 민간 임차장비 대수 증가에 따라 살포기 및 삽날 추가 구매(7대) 및 노후장비(1대) 교체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상세하게 작성)	비고
		계	2,107,500
제설장비 구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자동염수살포장치 140,000,000원 * 11대 = 1,540,000	굴삭기장착용
		· 살포기 55,000,000원 * 8대 = 440,000	
		· 제설삽날 15,000,000원 * 8대 = 120,000	
		· 제설제 포대 자동절개장치 7,500,000원 * 1대 = 7,500	

**□ 사업 추진계획**

- 2019.09. : 자동염수살포장치 착공, 살포기 및 삽날, 굴삭기 장착용 제설제 포대 자동절개장치 구매
- 2019.11. : 자동염수살포장치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 살포기 구매 : 2.5톤용 1대, 8톤용 1대 : 74,107,020원	
2017년	- 살포기 15톤용 5대 구매, 삽날 3200mm 5대 구매 : 328,620,000원	
2018년	- 살포기 15톤용 12대 구매, 삽날 3200mm 12대 구매 : 812,770,550원 - 자동염수살포장치 6개소 설치 : 940,497,760원 - 다목적도로관리차 구매 : 161,547,670원 - 약품탱크 추가설치 : 30,248,380원 - 제설포대 자동절개장치 구매 2대 : 13,500,000원 - 읍면동 배정 트랙터장착용 삽날 23대 구매 : 36,308,010원	
2019년	- 자동염수살포장치 추가 설치(13개소) 및 증설(2개소) : 2,126,455,18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95,642	74,107		21,535	
2017년	342,000	328,620	-	13,380	
2018년	1,997,500	1,994,872	-	2,628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환경팀장 연구환	담당자	행정7급 정희선	전화	2778
-----	-------	------------	-----	----------	----	------

#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P - 18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0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전지역
- 사업규모 : 32,335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가로등 및 보안등의 고효율 LED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로 인한 공공요금 감액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050,000	3,078,270	4,398,270	0	-1,320,000	-971,730	
국 비							
도 비							
시 비	4,050,000	3,078,270	4,398,270	0	-1,320,000	-971,73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가로등 및 보안등 도로전기시설물의 고효율 LED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로 인하여 공공요금 감액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8.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가로등 및 보안등 도로전기시설물의 고효율 LED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로 인하여 공공요금 감액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201-02 공공운영비	·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감액 = -1,320,000	

## □ 사업 추진계획

- 2019.01. ~ 12. : 연중납부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시설팀장 연결후	담당자	전기운영6급 최인호	전화	2796
-----	-------	------------	-----	------------	----	------

# [보안등 설치 및 교체] (P - 18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09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전지역
- 사업규모 : 보안등 설치 및 교체 495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범죄취약지역 내 보안등 설치 및 교체로 범죄예방 및 시민 재산보호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00,000	960,000	320,000	320,000	320,000	660,000	
국 비							
도 비							
시 비	300,000	960,000	320,000	320,000	320,000	660,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범죄취약지역 내 도로조명시설 미설치에 따른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의 문제점 발생 방지
- 노후된 등기구를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 및 신설하여 에너지 절약 및 도시미관 조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도로법	제 31조 1항
근거내용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8.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범죄취약지역 내 전주부착형(폴포함) 보안등 신규 설치 및 교체 민원 지속적 증가
- 보안등 신규 설치 및 노후 보안등 교체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계	320,000
보안등 설치 및 교체	401-01 시설비	· 전주부착형 보안등 설치 : 800,000원 * 100개소 = 80,000 · 전주부착형 보안등 교체 : 600,000원 * 375개소 = 225,000 · 폴대형 보안등 설치 : 1,500,000원 * 10개소 = 15,0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19.08. ~ 09. : 계약심사,일상감사 및 현장조사
  - 2019.09. : 공사착공
  - 2019.12. : 공사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범죄취약지 LED보안등 376식 설치	
2018년	- 범죄취약지 LED보안등 368식 설치	
2019년	- 범죄취약지 LED보안등 설치 및 교체 (1차) 320식 설치, 75식 교체 - 범죄취약지 LED보안등 설치 및 교체 (2차) 100식 설치, 480식 교체	(2차) 추진중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360,000	347,040		12,960	
2018년	300,000	294,510		5,490	
2019년	640,000	445,174		194,826	164,000 9월 지출예정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시설팀장 연결후	담당자	공업9급 손준영	전화	2737
-----	-------	------------	-----	----------	----	------

# [불법노상적치물 시정명령 스티커 제작] (P - 18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09월 ~ 12월
- 위 치 : 관내 주요도로
- 사업량 : 불법노상적치물 단속용 스티커 20,000매 제작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도로상 무분별한 불법 사항을 단속하고 계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	5,000	-		5,000	5,000	
국 비							
도 비							
시 비	-	5,000	-		5,000	5,000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근거내용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임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8.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 한강신도시,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건축인허가 증가로 인한 불법적치물 처리 민원 증가
- 도시철도 역사 주변 등 무분별한 노점상 급증에 따른 신속한 단속 민원 대응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불법노상적치물 단속용 스티커	201-01 사무관리비	· 스티커 : 250원 * 20,000매 = 5,000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10. : 스티커 제작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 행정대집행 3건, 행정명령(영장) 4건, 사전예고(계고) 29건, 과태료 부과 3건, 이전 및 철거 명령 2,500여건	
2017년	- 행정대집행 4건, 행정명령(영장) 53건, 사전예고(계고) 53건, 이전 및 철거명령 4,500여건	
2018년	- 행정대집행 16건, 행정명령(영장) 180건, 사전예고(계고) 180건, 이전 및 철거명령 6,000여건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환경팀장 연구환	담당자	공업9급 김지운	전화	2752
-----	-------	------------	-----	----------	----	------

# [도로보수원 사무실 유지관리] (P - 18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4. ~ 12. ○ 위 치 : 김포시 감암로 107
- 사업규모 : 기존 보수원 사무실 1동 개축 및 창고 1동 증축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휴식 및 대기 공간인 도로보수원 사무실을 정비하여 현장근무가 많은 도로보수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근로만족도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0,578	442,812	9,612	334,700	98,500	432,234	
국 비							
도 비							
시 비	10,578	442,812	9,612	334,700	98,500	432,23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노후되고 건물 기초가 파손된 보수원 사무실을 개축하고, 창고를 증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 누락된 정보통신설비 사업비와 상수도 인입관 확관(기존 15mm 급수관 ⇒ 32mm) 등으로 현지여건 반영에 따른 사업비 증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무기계약 및 기간근로자 관리규정	제71조 제1항
근거내용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8.11월	-	2019.02월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휴식 및 대기 공간인 도로보수원 사무실을 정비하여 현장근무가 많은 도로보수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근로만족도 향상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계	433,200 98,500천원
도로보수원 사무실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소계 416,500 · 실시설계비 : 22,000천원 * 1식 = 22,000 · 사무실개축 : 67㎡ = 185,500 · 창고증축 : 112㎡ = 209,000	시설비 증가 96,500천원
	401-02 감리비	· 설계 감리 1식 = 5,000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계 11,700 · 냉난방기 : 860,000원 * 5대 = 4,300 · 온수기 : 600,000원 * 1대 = 600 · 건조기 : 1,900,000원 * 1대 = 1,900 · 세탁기 : 1,200,000원 * 1대 = 1,200 · 청소기 : 850,000원 * 2대 = 1,700 · 냉장고 : 2,000,000원 * 1대 = 2,000	냉장고 구입 2,000천원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25,000		325,000	98,500		
공정 별	설계비		22,000		22,000			
	보상비							
	공사비		298,000		298,000	96,500	시설비 증가	
	감리비		5,000		5,000			
	부대비					2,000	냉장고 구입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2. : 공유재산 심의회 승인
- 2019.06. ~ 08.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9.09. : 공사착공
- 2019.12. : 공사준공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위치도</p>	
<p>현장사진</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장 오현철	담당자	시설6급 오현철	전화	2782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계	2,000,000
한강신도시 특화거리 재정비공사	401-01 시설비	· 실시설계 용역비	= 40,000
		· 도로 포장공사(a=40a)	= 300,000
		· 보도 설치공사(L=1.2km)	= 540,000
		· 측구정비 및 배수로 정비(L=1.2km)	= 400,000
		· 전기공사 1식(디자인 조명 등)	= 720,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000,000	1,000,000	1,000,000	500,000		500,000	
공 정 별	설계비		40,000	40,000			
	보상비						
	공사비	2,000,000	1,000,000	960,000	460,000	500,0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 ~ 07. :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이행
- 2019.08. ~ 12. : 공사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2018년	1,000,000		1,000,000		
2019년	500,000	39,456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b>위치도</b></p>	
<p><b>현장사진</b></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장 오현철	담당자	시설7급 임수진	전화	2784
-----	-------	------------	-----	----------	----	------

# [민통선 LED가로등 설치 및 교체] (P - 18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08월 ~ 10월
- 위 치 :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일원
- 사업규모 : 122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군부대 인근 도로 군 작전시 가로등의 설치 및 교체로 밝기 개선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33,720	0		133,720	
국 비						
도 비		66,680	0		66,680	
시 비		66,860	0		66,86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군부대 일원 주변도로의 가로등을 고효율 LED가로등으로 설치 및 교체로 보행자 안전사고 사전예방
- 마을 주민의 심야 시간 대 귀가 시 불안한 마음 해소 및 각종 범죄예방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도로법	제 31조 1항
근거내용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8.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민통선 군부대 인근 도로 가로등 신규 설치 및 교체 민원 지속적 증가
- 가로등 신규 설치 및 노후 가로등 교체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계	133,720
민통선 LED가로등 설치 및 교체	401-01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부착형 가로등 설치 : 760,000원 * 48식 = 36,480</li> <li>· 전주부착형 가로등 교체 : 600,000원 * 64식 = 38,400</li> <li>· 폴대형 가로등 설치 : 150,000원 * 10식 = 15,000</li> <li>· 부대공사 1식 = 43,840</li> </ul>	

**□ 사업 추진계획**

- 2019.08. : 계약심사, 일상감사 및 현장조사
- 2019.08. : 공사착공
- 2019.10. : 공사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 2019년 신규추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위치도</p>	
<p>현장사진</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시설팀장 연결후	담당자	전기운영6급 최인호	전화	2796
-----	-------	------------	-----	------------	----	------

# [도로점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결과분석] (P - 18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09월 ~ 11월
- 조사대상 : 김포시민 1,000명
- 사업규모 : 도로점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도로상 영업시설물 도로점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	12,000	-		12,000	
국 비						
도 비						
시 비	-	12,000	-		12,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19. 6. 3. 제1회 도로상 영업시설물 정비 및 허가제 도입을 위한 상생위원회 개최결과 주민설문조사 실시 결정(후속행정 절차 이행)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도로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근거내용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불법 노상판매대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허가제 도입관련 상생위원회 구성(개최)결과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향후 도로점용허가제 세부기준 재검토 및 관련단체 면담 후 상생위원회 회의개최 예정('19.12.)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공 통		○ 단가(원)×인원(명)×개소×회수(회)×일수(일)×비율(%)	12,000
도로점용 허가제 도입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결과분석	201-01 사무관리비	· 인 건 비 : 책임자1+담당자2+보조업무자1 = 4,673	
		· 직 접 비 : 프로그램, 서버관리, 분석비 = 4,800	
		· 일반관리비 : (인건비+직접비) × 5% = 474	
		· 이 윤 : (인건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 995	
		· 총 계 : (인건비+직접비+일반관리비+이윤) = 10,941	
		· 부가가치세 : (총계) × 10% = 12,0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19.09. ~ 2019.10. : 주민설문조사 실시
  - 2019.11. : 주민설문조사 분석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 2019년 신규추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환경팀장 연구환	담당자	공업9급 김지운	전화	2752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계	510,000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보행교통시설물 설치 (펜스,차선분리대 등) = 150,000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400,000원 * 150개 = 60,000 · 도로 차선 및 노면표지 유지관리 20,000원 * 15,000㎡ = 30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9. ~ 10. : 계약심사, 일상감사 및 현장조사
  - 2019.10. : 공사착공
  - 2019.12. : 공사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보차도펜스 66경간 설치 - 교통안전표지판 71개 설치 - 쏠라경광등 3개 설치	
2018년	- 차선분리대 2,939경간 설치 - U형 블라드 8개 설치 - 보차도펜스 350경간 설치 - 표지판 105개 설치 및 교체	
2019년	- 차선분리대 1,155경간 설치 - 보차도펜스 219경간 설치 - 교통안전표지판 39개 설치 및 교체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330,000	293,690		36,310	
2018년	870,000	795,000		75,000	
2019년	1,020,000	701,000		319,00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시설팀장 연결후	담당자	시설9급 송세진 공업9급 손준영	전화	2797 2737
-----	-------	------------	-----	----------------------	----	--------------

# [교통신호등 정비사업] (P - 18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09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전지역
- 사업규모 : 교통신호등 5개소 설치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신호등 설치로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754,000	1,100,000	720,000		380,000	346,000	
국 비							
도 비							
시 비	754,000	1,100,000	720,000		380,000	346,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교통신호등 설치민원에 따른 김포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심의통과에 따른 5개소 추가 설치 필요
- 노후된 교통신호 제어기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교체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 음향신호기 등 보조신호를 교체하여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 3조 1항
근거내용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8.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교통신호등 설치민원에 따른 김포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심의통과에 따른 5개소 추가 설치 필요
- 노후된 교통신호 제어기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교체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 고장 및 노후된 음향신호기 교체를 통한 장애인 보행권 확보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b>계</b>	<b>380,000</b>
신호등 설치공사	401-01 시설비	· 교통신호기 설치 50,000,000원 * 5개소 = 250,000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10,000,000원 * 5식 = 50,000	
		· 노후 교통신호전선 교체 20,000,000원 * 2개소 = 40,000	
		· 노후 음향신호기 교체 800,000원 * 25대 = 20,000	
		· 노후 신호등 부착연결줄 교체 4,000,000원 * 5개소 = 2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9. ~ 10. : 계약심사, 일상감사 및 현장조사
  - 2019.10. : 공사착공
  - 2019.12. : 공사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4개구역) - 솔터초등학교 입구 외 2개소 신호등 설치공사 - 솔터마을 2단지 외 3개지역 신호등 설치공사	
2018년	-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4개구역) - 노후교통제어신호기 교체공사 -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 2식(마산동 솔터고등학교 및 마산 119안전센터 일원)	
2019년	-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5개구역) - 노후교통제어신호기 10개소 교체공사 -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 3식(고촌 하나교, 양촌읍 신양초등학교, 양촌읍 곡촌마을7단지 삼거리)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699,000	687,044		11,956	
2018년	754,000	731,113		22,887	
2019년	720,000	495,643		224,357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시설팀장 연결후	담당자	공업6급 연결후	전화	2783
-----	-------	------------	-----	----------	----	------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철도과**





# [도시철도 건설사업] (P-29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9
- 위 치 : 김포한강차량기지~김포원도심~김포공항역(환승)
- 사업규모 : 도시철도건설(총연장23.67km/전구간 지하), 정거장10, 차량기지 1, 완전무인 자동운전 23편성(2량 1편성)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김포시 장래 대중교통수요의 10%이상 분담함으로써 도로피로도 완화 및 도로교통 분산
  - 전구간 지하로 건설하여 도시확장, 미관보호, 시민생활권 침해방지 등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40,000,000	350,000	-	-	350,000	-39,650,000
국 비						
도 비						
시 비	40,000,000	350,000	-	-	350,000	-39,650,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김포도시철도 차량 떨림과 관련, 추가 검증시험을 위한 감독 및 업무 지원, 운영기관과의 업무조율 등을 위한 사업관리분야 인력투입 계획 조정 및 관련 비용 증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도시철도법	제24조
근거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2014.3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김포도시철도 개통연기에 따른 사업관리분야 인력투입계획 조정 등
  - 영업시운전 결과조치 및 차량 떨림 검증시험을 위한 감독 및 업무지원, 운영기관과의 업무조율, 시스템분야 준공처리 등을 위한 필수 인력 조정 반영 및 관련 비용 증가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도시철도 건설공사	공기관등에대한자본 적위탁사업비	○ 사업관리비(철도사업단) · 인건비 : 4,687,318원*26인·월 = 121,871 · 제경비·기술료 등 : 228,129,000원*1식 = 228,129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2017. 10 차량 제작완료(23편성) 2017. 10 궤도부설 완료 2017. 12 차량 반입완료(23편성) 2017. 12 전기 통신 공사 개통(수전)	
2018년	2018. 11. 노반공사 완료 2018. 11. 공종별 시험 완료	
2019년	2019. 8. 종합시험운행 등 단계별 시운전 및 검증완료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372,506,113	346,981,811	25,520,715	3,587	
2018년	65,520,715	57,196,846	8,323,869	0	
2019년	8,323,869	7,268,739	-	1,055,130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철도과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담당자	시설7급 김성관	전화	5532
-----	-----	------------	-----	----------	----	------

# [김포골드라인 운영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P - 29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10. ~ 2020.02.
- 위 치 : 김포한강차량기지 및 김포도시철도 전 구간(김포공항역 포함)
- 사업규모 : 1식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투입인력 적정성 검토 및 운영 안전성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	125,000	-	-	125,000	
국 비						
도 비						
시 비	-	125,000	-	-	125,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투입인력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 김포골드라인운영(주)의 인력구조, 조직발전 등 전문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제①항
근거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채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2019.8.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김포도시철도 운영관련 노·사·정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2019.6.3)내용 이행
-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투입인력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 김포골드라인운영(주)의 인력구조, 조직발전 등 전문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 이후 법령, 제도 등 환경변화 요인분석과 타 철도사례 비교분석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김포골드라인운영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207-01)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적정성 검 토 연구용역 = 125,000 - 125,000,000원 * 1회 = 125,000천원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6. 3. : 김포도시철도 운영관련 노·사·정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체결
- 2019. 10월 : 용역 발주
- 2020. 2월 : 용역 준공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철도과	철도운영팀장 서승수	담당자	시설7급 박종진	전화	5535
-----	-----	------------	-----	----------	----	------

# [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개통전)] (P - 29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 2019
- 위 치 : 김포한강차량기지 및 김포도시철도 전 구간(김포공항역 포함)
- 사업규모 : 1식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김포도시철도의 편리하고 안전한 적기개통 준비 및 운영효율성 증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700,000	9,999,510	4,992,000	595,820	4,411,690	5,299,510	
국 비							
도 비							
시 비	4,700,000	9,999,510	4,992,000	595,820	4,411,690	5,299,51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개통일정 변경에 따른 개통 전 인력투입 비용 및 관련비용 투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도시철도법	제42조 제①항
근거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운영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채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동의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8.11월	-	-	-	-	2016.2월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09년 9월 국토교통부 사업면허시 운영사를 별도 선정(위탁)토록 면허조건 제시
- 김포도시철도 종합시험운행(영업시운전) 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추가 요구(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증 용역)에 따른 개통일정 변경 및 관련 비용 발생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307-05)	<p>○개통 전 운영기관 인력투입 ·231명×4,836,200원×1.1 = 1,228,878,420원/월 ·1,228,878,420원×3개월 = 3,686,635,260원</p> <p>○완성토목공사물보험료 ·15,264,344원÷94일('19.07/24~'19.10/26)×31일 × 1.1 = 5,537,390원/월 ·5,537,390원 × 3개월 = 16,612,170원</p> <p>○승강설비 외주용역비 ·280,520,000원(VAT포함)÷7개월=40,074,290원/월 ·40,074,290원 × 3개월 = 120,222,870원</p> <p>○경비용역비 ·역사:14,176,800원(VAT포함)÷12월=1,181,400원/월 : 1,181,400원 × 3개월 = 3,544,200원 ·기지:822,178,032원(VAT포함)÷62월= 13,260,940원/월 : 13,260,940원 × 3개월 = 39,782,820원</p> <p>○청소용역비 ·역사,기지,차량:6,283,114,888원÷60월=104,718,580원/월 : 104,718,580원 × 3개월 = 314,155,750원</p> <p>○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른 역무자동화시스템(AFC) 개선 비용 ·330,000,000원 × 1회 = 330,000,000원</p> <p>○소방설비 법정점검 비용 ·종합관리동, 검수고, 각 역사 소방설비 점검비용 : 22,000,000원 × 1회 = 22,000,000원</p>	= 4,533,0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09. 09. 02 : 김포도시철도 건설·운영 사업면허 교부(국토부 면허조건 : 위탁)
- 2016. 02. 24 : 김포도시철도 관리·운영 민간위탁(시의회 원안동의)
- 2016. 06. 30 : 민간위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서울교통공사)
- 2017. 01월 ~ : 단계별 운영인력의 투입 및 시운전 참여
- 2018. 01월 ~ :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설립 및 단계별 인력투입
- 2018. 01월 ~ : 김포도시철도 현장점검 및 노반분야 유지관리 준비
- 2019. 04월 : 김포도시철도 운송사업면허 취득(경기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04. ~ 06. : 자회사설립 출자타당성 용역추진</li> <li>- 2017.04. ~ 11. : 운영준비단 교관양성 교육</li> <li>- 2017.04. ~ 12. : 김포도시철도 현장점검 및 운영준비</li> <li>- 2017.04. ~ 12. : 수도권통합요금제 적용 관련 정책협의지원 및 연락운송기관 협의</li> </ul>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1. : 자회사 설립(김포골드라인운영(주))</li> <li>- 2018.01. ~ 12. : 운영사 교관양성 교육 및 운영사 교육(관제사, 차량분야 등)</li> <li>- 2018.01. ~ 12. : 김포도시철도 현장점검 및 노반분야 유지관리 준비</li> <li>- 2018.04. ~ 12. : 김포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취득 사전협의(경기도)</li> </ul>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04 :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운송사업 면허취득(경기도)</li> </ul>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2,374,709	2,374,709	-	-	
2018년	4,700,000	4,673,294	-	26,706	
2019년	5,587,820	5,466,510	-	121,310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철도과	철도운영팀장 서승수	담당자	시설7급 김동성	전화	5537
-----	-----	------------	-----	----------	----	------

# [김포도시철도 시설물 유지관리(개선)사업] (P - 29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10. ~ 2019.12.
- 위 치 : 김포한강차량기지 및 김포도시철도시설물(각 환기구)
- 사업규모 : 보호계전 시험기, 궤도모터카 연결기 등 5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변전소 및 전기실에 보호설비를 설치하여 수전단 이하 계통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신속·정확하게 검출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
  - 운행 중 고장 발생 시 사고복구차로 구원 연결, 신속 견인 조치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
  - 비상시 오작동 방지 및 이용객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탈출, 평상시 외부인 출입 방지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	105,000	-	-	105,000	
국 비						
도 비						
시 비	-	105,000	-	-	105,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종합시험운행 지적사항에 대한 시설물 추가 보완
-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기기구매 및 설치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근거내용	2. 선로에 열차의 안전운행 및 여객의 안전을 위해 노반(路盤)·교량·터널 등에 탈선방지시설, 대피시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3. 역시설에 열차가 안전하게 정지·출발하고 여객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대기할 수 있도록 승강장, 대합실, 피난로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예시) 비대상	(예시) 비대상	(예시) 비대상	동의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2016.2월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종합시험은행 기간중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및 열차운행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기기 구매설치
  - 보호계전기 시험기 : 고장장에서 보호계전기 상태 확인을 위한 시험기 구축
  - 궤도모터카 연결기 제작 : 궤도모터카 고장발생시 사고복구차와의 연결을 용이하도록 연결기 제작
  - 지상대피로 피난계단 출입문 시건장치 개선(장기역~김포공항역 구간)
    - 막대형 걸쇠가 구멍에 들어가는 현재 방식은 오류 발생하여 종합관제실에서 외부인 출입통제 불가 및 개선 필요
  - 냉난방 장비 설치 : 이용객의 긴 대기시간이 예상됨에 따라 폭염 및 한파에 대비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김포도시철도 안내사인 정비 : 이용승객 편의를 위한 환승통로, 피난통로 등 정거장 안내사인 추가 설치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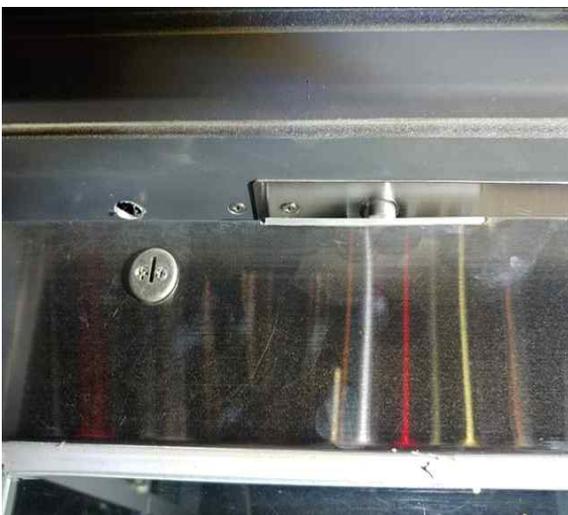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민간위탁사업비 (40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계전기 시험기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분석계 : 6,700,000원*1대</li> <li>· 배터리테스터 : 6,400,000원*1대</li> <li>· 3상 계전기 시험기 : 37,000,000원*1대</li> </ul> </li> <li>○ 궤도모터카 연결기 제작 = 5,03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비 및 제작비 : 4,330,000원*1대</li> <li>· 도장 및 샷트 : 700,000원*1대</li> </ul> </li> <li>○ 지상대피로 피난계단 출입문 시건장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재비 : 250,000원*9개소</li> <li>· 노무비 : 275,000원*9명</li> <li>· 경비 : 25,000원*9개소</li> </ul> </li> <li>○ 냉난방 장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촌역 하선 승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난방 장비 : 2,000,000원*1개소</li> <li>· 설치 공사비 : 1,000,000원*1개소</li> <li>· 방풍문 자재비 : 4,000,000원*1개소</li> <li>· 방풍구역 자재비 : 1,600,000원*1개소</li> </ul> </li> <li>- #24 환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방 장비 : 7,500,000원*1대</li> <li>· 제경비 : 2,500,000원*1식</li> </ul> </li> </ul> </li> <li>○ 김포도시철도 안내사인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거장 안내사인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내사인(SOS,AED 등) : 35,000원*212개소</li> <li>· 측광 표시 : 15,000원*271개소</li> <li>· 화장실,피난계단 등 표시 : 20,000원*309개소</li> <li>· 노무비 : 200,000원*16명</li> </ul> </li> <li>- 김포공항역 환승통로 안내사인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대형 사인 교체 : 250,000원*2개소</li> <li>· 벽부형 사인 설치 : 300,000원*6개소</li> <li>· 바닥 사인 설치 : 500,000원*4개소</li> </ul> </li> <li>- 피난통로 안내사인(대피방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단모양(600*900) : 80,000원*12개소</li> <li>· 피난화살표(420*120) : 25,000원*5개소</li> <li>· 관계자 표시(600*400) : 35,000원*2개소</li> </ul> </li> </ul> </li> </ul>	= 105,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10 ~ 2019.11 : 제작(구매) 의뢰
- 2019.12 : 구매 및 설치

□ 위치도 및 현장사진(해당없을시 미제출)

<p><b>현장사진 (칼라)</b></p>	<p>(사고복구차)</p> 	<p>(궤도모터카)</p> 
	<p><b>위치도 10,000 :1 이상 (칼라)</b></p> 	
<p><b>현장사진 (칼라)</b></p>	<p>(조치 전)</p> 	<p>(조치 후)</p> 

<p>위치도 10,000 :1 이상 (칼라)</p>	
--	--

<p>현장사진 (칼라)</p>	<p>(현장 사진)</p>	<p>(예정 시안)</p>

<p>현장사진 (칼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p> <p>타는 곳 Tracks 乗車 のりば</p> <p>인천국제공항 시흥대 5</p> <p>경매 평안남도평안도 9</p> <p>의정부 당곡동 5</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p> <p>타는 곳 Tracks 乗車 のりば</p> <p>5 개화산 보문</p>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김포공항역</p>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철도과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담당자	시설7급 김성관	전화	5532
-----	-----	------------	-----	----------	----	------